

정책건의

한경연 2016-2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개혁과제

Private enterprise

Global Competitiveness

Asymmetric regulation

정책건의

한경연 2016-2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개혁과제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발행인 권태신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전 화 02-3771-0001
팩 스 02-785-0270~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개혁과제』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양금승 선임연구위원
Office: 02-3771-0306, E-mail: yks@keri.org

I. 지배구조·경영구조(16건) 1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3
2.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 규모 상향 조정	6
3. 지주회사 증손회사 보유규정 제한 개선	8
4.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범위 축소	14
5. 특수관계인 간 거래행위의 중복·과잉규제 개선	16
6. 순환출자금지 규정 개선	17
7. 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	18
8. 사외이사 선임비율 강제 폐지	19
9.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 규제 폐지	21
10. 집중투표 배제 시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폐지	23
11.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 추정규정 삭제	26
12. 1/3 미만 임원점입時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29
13. 담합에 대한 합의추정 규정 삭제	30
14.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재편	32
15. 경쟁제한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34
16.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	37

II. 중소기업 보호·동반성장(22건) 39

1.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	41
2. 대기업의 MRO 사업 규제 완화	44
3.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개정	46
4. 신규 ICT 공공사업(Iot 등)의 대기업 참여 허용	53
5. 대기업의 공간정보산업 공공입찰 허용	55
6. 대기업의 보완용 카메라 공공입찰 허용	57
7. 대기업의 레미콘 공공시장 참여 허용	58
8. 승강설비 유지보수 정부조달시장의 대기업 참여 허용	62
9.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데스크톱 PC 대기업 비중 유지	63
10. 전동기에 대한 대기업 공공입찰 제한 해제	65
11.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참여 허용	66
12.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출 방식의 개선	67
13.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	70
14. 식품 제조업(도시락)의 대기업 진출 제한 완화	71
15.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운영기준 개정	72
16. 중소기업 졸업 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의 점진적 축소	73

17. 하도급법 대금결제기간의 합리적 개선	74
18. 하도급법내 부당한 가격결정 예외사항 추가	75
19.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內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76
20.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수급사업자 공지의무 추가	80
21.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중규제 완화	81
22. 의무고발 요청제도 개선	83

Ⅲ. 산업(R&D·정보통신·에너지 등)(17건) 85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규모별 제약조건 합리성, 객관성 확보	87
2. 국책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운영기준 차별 폐지	91
3.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용자의 개별 동의의무 삭제	92
4.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 폐지	93
5.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정 완화	94
6. 가스공사 LNG 계약구조 개선	95
7.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정산조정계수 동일 적용	97
8. 전기시장 운영관련 규칙개정위원회 민간사 참여	99
9.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민간사업자) 확대 적용	100
10. LPG 수입업체와 생산업체 간 석유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101
1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비축의무 완화	103
1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일몰	105
13. 석유류와 전기 등 에너지원간 조세 형평성 제고	106
14. 수송용 에너지원(휘발유/경유와 CNG/LPG간) 간 세제 형평성 개선	108
15. 석유 중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110
16. 정유공정에 원료용 투입되는 석유류 중간제품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112
17. 클린디젤버스/클린디젤하이브리드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면제	114

Ⅳ. 토지이용·수도권(14건) 117

1.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완화	119
2.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공장용도변경 제한 완화	123
3.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세로 전환	124
4.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분양 요건 완화	127
5. 선분양한 산업단지의 세제혜택 기간 조정	130
6. 민간 사업시행자의 건축사업 규제 완화	131
7.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	133
8.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해외 U턴 기업의 세제 지원	136
9. 기업도시 일부 준공 제한 완화	139
10.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 연장	141

11. 기업도시에 대한 재정, 기반시설 명시화	142
12.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보유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143
13. 기업도시내 관광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절차 마련	146
14. 기업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147

V. 건설·건축·SOC(8건) 149

1. 기술형 입찰공사의 10개사 공동도급 제한 완화	151
2. 대기업의 공공분야 입찰 제한 완화	154
3. 건설보조금 요구액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155
4.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156
5. 민간기업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권 부여	157
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159
7.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161
8.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제도 개선	162

VI. 유통·물류(11건) 165

1.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167
2. 대규모 점포 출점규제 완화	169
3.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차량수급 및 운영범위 제한 완화	170
4. 민간택배에 대한 차별규제 개선	173
5. 택배업종의 외국인 고용 허용	176
6. 물류센터의 입지 제한 완화	178
7. 물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80
8. 안전설비 투자(유통합리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182
9.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184
10. 해외 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규제 완화	186
11. 국제선 운임의 인가 시 기획재정부 협의절차	188

VII. 금융·자금조달(9건) 189

1.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완화	191
2.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한도 제한 완화	193
3.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변경절차 신설	195
4.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 증권금융회사 예치의무 완화	196
5.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197
6. 보험사의 구속성보험 규제 합리화	199

7.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서면동의 강제 폐지	201
8.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폐지·완화	203
9.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허용	204

VIII. 인력·노사(5건) 205

1. 고용형태 공시제도 공시항목의 개선	207
2. 직업훈련 인정요건 최소기준 통일	208
3. 직업훈련 지원금 차등적용 개선	209
4. 병역특례 대기업 T/O 배정	211
5.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제한 개선	212

IX. 조세(15건) 213

1.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차등 완화	215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규모별 차별 해소	216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동일 적용	218
4.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혜택 부여	220
5. 외국법인(소유주 한국 국적)의 국내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222
6.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	224
7.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한 연장	227
8.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229
9. 기업소득 환류세 적용시 배당제한 기업을 고려하는 장치 마련	231
10. '기업도시 토지에 대한 투자'를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한 투자로 인정	232
11. 중소기업 이외 법인의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허용	236
12. 법인 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237
1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238
14. 리튬폴리머 축전지 관세율포 개정	239
15. 백금족 귀금속 관세율 조정(철폐)	241

Ⅰ . 지배구조 · 경영구조

◀ 목 차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3
2.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 규모 상향 조정	6
3. 지주회사 증손회사 보유규정 제한 개선	8
4.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범위 축소	14
5. 특수관계인 간 거래행위의 중복·과잉규제 개선	16
6. 순환출자금지 규정 개선	17
7. 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	18
8. 사외이사 선임비율 강제 폐지	19
9.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 규제 폐지	21
10. 집중투표 배제 시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폐지	23
11.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 추정규정 삭제	26
12. 1/3 미만 임원겸임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29
13. 담합에 대한 합의추정 규정 삭제	30
14.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재편	32
15. 경쟁제한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34
16.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	37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현 황】

- 직전 사업년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법 등 총 42개 법률, 총 89건의 각종 규제가 적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기업활동을 제한
 - 대표적인 규제로는 계열사간 출자규제(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계열사간 신규출자 전환금지, 계열사간 지급보증금지) 등이 있음
- S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계열사와의 연결기준 자산규모가 5조 원이 초과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적용을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
 - 또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라 즉시 대기업으로 분류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2008년 자산총액 5조 원 기준이 지정된 이후 국내총생산은 2008년 보다 40% 가까이 성장하였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분류의 결정요인인 자산 5조 원 이상의 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8년째 변함이 없음
 - 2008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이 2조 원에서 5조 원로 상향되자 상당수 기업집단(15개)이 자산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완화와 자산규모 확대시점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닌 중견기업 집단들도 새로이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 FTA 등 시장 개방과 경영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채무보증, 출자 등 계열사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므로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역차별 소지가 있음

□ 자금조달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됨으로써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묶인 계열회사의 개별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되므로 중소기업 역시 채무보증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외부 자금 조달 등에 제한

□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 축소

- S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됨에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이 8%에서 즉시 3%로 줄어들어 따라, 당사의 연구개발투자 부담이 증가. 따라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 축소는 당사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수직계열화, 효율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통해 전체 기업집단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성장성이 제한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제한이 되는 현실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시가보다 높은 판매 등) 문제는 현재 법인세 규제로도 제한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여러 제약이 따르나, 5조 원 기업과 100조 원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구조

- 예컨대, 동반성장지수 산정도 마찬가지로 100조 원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과 2조 원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으나,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지수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으며, 과거 제조업 위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바이오 및 IT로 산업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5조 원)은 현재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필요

【개선방안】

-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 아직까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산업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바이오, IT 등의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확실적인 외형(자산규모)에 의한 규제가 아닌, 실질적인 독과점 방지 등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 기업규모와 그간 공정위 규제기준 상향추이를 살펴볼 때, 적절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기업간 공정경쟁 유발 위해 기업규모에 따른 합리적 차등규제 및 평가기준 적용 검토 필요
 - － 예시) 현재 자산총액 5조 원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자산규모의 조정 및 지정기준의 세분화
- ※ 최근(2016.6.9.) 정부는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의 상향(5조 원 → 10조 원) 조정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2016년 9월까지 완료하고, 규제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6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발표

2.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 규모 상향 조정

【현 황】

- 상장회사는 기업규모에 차등을 두어 지배구조 관련규제를 강화(상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37조)
 - 사외이사 선임의무 법인
 -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코스닥벤처기업을 제외한 모든 상장회사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3인 이상 및 이사회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 상근감사 선임의무 법인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
 - 감사위원회 구성의무 법인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 경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와 동일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
- 특히, 舊증권거래법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2002년 개정)하면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을 대규모 상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엄격하나 규제 적용(제542조의8 제1항 단서,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제542조의7 제2항, 제542조의9)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 사례>

구분	일반 기업	대규모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비율	제한 없음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자유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집중투표제	3% 이상 주식 보유 주주 청구 가능	1% 이상 주식보유 주주 청구가능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한 없음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승인 의무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경제발전예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 법인 판단기준 유지
 - 경제성장으로 기업의 자산가치는 상승한 반면, 대규모 상장법인의 판단기준은 10년간 유지(GDP 2000년 635.2조 원 → 2015년 1,558.6조 원, 2.5배 증가)
 -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상장법인(자산2조원 이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수가 2000년 88개사에서 2016년 6월 20일 현재, 151개사로 1.7배 증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증가 현황>

구분	1986(A)	2000(B)	2016.6월(C)	A/C(%)
상장법인수	198개사	675	2,055개사	937.8%
2조원 이상 법인수	47개사	88	151개사	221.3%
구성비	23.73%	13.04%	7.34%	-16.39%

자료 : KRX 상장공시시스템

- 지배구조규제가 본격 도입된 2000년 경 확인된 코스닥법인 543개사 중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회사는 94개사(17.3%)였으나, 2015.12.31 현재 코스닥법인 1,094개사 (SPAC, 외국법인 및 상장폐지법인 제외) 중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회사는 465개사(42.5%)로서 규제대상 법인의 비중이 2.5배 가량 증가
- 규제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한 공정거래법 등과 형평성 문제 초래
 - 대규모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규모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일부 규제는 폐지하기도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 (~2002) 30대 그룹 → (2002) 자산 2조 원 → (2008) 5조 원 → 10조 원(2016년)
 - *출총제 대상 : (~2002) 30대 → (2002) 자산 5조 원 → (2004) 6조 원 → (2007) 10조 원 → (2009) 폐지

【개선방안】

-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주주총회 선임 등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1천억 원과 2조 원의 기준을 상향 조정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관련 자산총액기준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자산총액 기준을 2조 원에서 5조 원 이상 상향 조정

<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② 법 § 542의8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u>2조 원</u>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② ----- ----- ----- <u>5조 원</u> 이상-----.

3. 지주회사 증손회사 보유규정 제한 개선

【현 황】

-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 및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 100%를 모두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역차별적 규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여, 증·고손회사 보유 등 출자단계 제약규제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100% 지분소유 증손회사만 허용하는 규제
 - 이에 한국은 기업집단의 사업구조 선택을 제약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기업집단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지주회사 관련규제 현황 비교〉

규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정의 (지주회사 강제전환)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 (특정 요건 해당 시,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	없음	없음
증손회사 보유 제한	원칙적으로 증손회사 보유 불가 (예외: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 허용)	없음	없음	없음
공동출자 금지 (직접지배회사 외 계열회사 출자 제한)	지주회사: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자회사: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없음	없음	없음
자·손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	상장 20% 비상장 40%	없음	없음	없음
비계열사 지분소유 규제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소유 금지	10% 이상 취득 시 보고 의무만 부과	없음	없음
금융회사 보유 제한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자회사 보유금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산 15조엔 초과 대규모 금융회사와 자산 3천억엔 초과 대규모 사업회사의 동시 보유 금지	없음	비금융회사의 은행지주회사 보유금지
부채비율 규제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없음	없음	없음
행위제한 유예기간 부족	주요 지주회사 관련 규제 미충족에 대한 유예기간 2년 (추가 2년 연장 가능)	-	-	-

주: 영국, 독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지주회사 규제는 없음
 자료: 이양복(201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부수정
 맹수석(2012), 해외 주요국 지주회사 제도 국제비교 연구

- 현행규제에 따라, 투자여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주회사 산하기업들이 손자회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음

※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주요 손자회사

- ▲ LG :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 CJ: 대한통운, CJ씨푸드 ▲ GS: GS칼텍스
- ▲ SK: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에너지, SK플래닛, SK하이닉스
- ▲ 두산 :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 코오롱: 코오롱클로텍, 코오롱플라스틱 등

<손자회사의 국내투자 저해 사례>

- ◆ LG의 손자회사인 “LG디스플레이”는 시가총액 11.5조 원, 매출 29조 원 규모의 대표적인 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증손회사 보유제한으로 인해 현재 2개의 100% 증손회사 (이미지엔머티리얼스, 나눔누리)만 보유중에 있으며, 신규성장을 위한 추가 증손회사 보유가 제한되고 있음
- ◆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시가총액 2.2조원, 매출 8조원규모의 세계 top 수준의 기계산업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증손회사 보유 제한으로 인해 현재 해외 증손회사만 21개 보유 중에 있음

- Global Standard와도 괴리된 증손회사 보유제한 등 지주회사 전환의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기업집단의 경쟁력 제고 필요
- (경제적 피해 발생) 지주회사 기업집단 내 출자구조를 2단계로 제한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거나 자산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 지주회사로서는 지분 100% 매입을 통한 증손회사 보유 또는 지분의 완전매각 중擇一 할 수밖에 없어,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사업기회 박탈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 우려

<알짜 증손회사 매각 사례>

- ◆ SK의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홍콩의 사모펀드에 매각.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음원서비스 1위 업체인 멜론을 보유, 최근 4년간 매출액(1,014억 원→1,850억 원) 및 영업이익(64억 원→301억 원)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

- 특히, 상장회사는 100% 지분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오히려 처분이 강제되는 결과, 기업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헐값 매각의 가능성 존재

<사업 철수 우려에 의한 주주 피해 사례>

- ◆ CJ는 손자회사인 CJ게임즈 산하의 증손회사들을 통해 게임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는 지분규제로 인한 사업의 포기를 우려. 이에 CJ게임즈의 모회사인 CJ&M의 주가가 4거래일 동안 18% 가량 급락해, 주주에게 심각한 피해 초래

◆ 이후에도 증손회사 규제가 불거진 경우,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주 피해 발생

□ (투자·고용 저해)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는 손자회사라도 100% 지분율을 강제할 경우, 대규모 증손회사 설립 투자를 통한 성장·고용이 어려움

○ 증·고손회사 보유 등에 제한이 없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사업구조 선택을 제약하는 결과,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계열사 보유에 의한 역외 투자를 조장할 우려

<증손회사 보유 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한 해외 투자 사례>

◆ D사의 손자회사인 D중공업은 매출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계장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증손회사 보유 제한으로 인해 현재 해외 증손회사만 21개 보유

○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큰 규제로 작용하므로 기술도입, 원자재 조달, 글로벌 마케팅 등을 위한 해외 합작 투자 역시 근원적으로 차단될 우려

<증손회사 보유 제한으로 인한 해외 합작기업 좌절 사례-외측법 개정 전>

국내 기업	해외 합작사	사업내용	총투자 규모	외국인 투자 규모(지분율)
GS칼텍스	다이요오일, 쇼와셀	여수, 연산 100만톤 규모 파라자일렌 공장 투자	1조 원	5,000억 원 (50%)
SK종합화학	JX에너지	울산, 연산 100만톤 규모 파라자일렌 공장 투자	9,600억 원	4,800억 원 (50%)
SK루브리컨츠	JX에너지	울산, 제3윤활기유 공장 신설	3,100억 원	870억 원 (28%)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현행법 상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의무화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 대기기업집단의 국내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불가능

○ 외국인합작투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개정 외측법만으로는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금조달에 대처” 하는 데 한계

<국내 벤처·중소기업 투자 좌절 사례>

◆ C사(D사의 손자회사)는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검색기술을 보유한 E사 인수를 검토하였으나, 증손회사 100% 지분소유 요건으로 인해 협상 결렬, 이후 E사는 해외 F사로 200억 원에 지분 45%를 넘기고 인수됨

- 특히, 벤처기업은 경영진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그들이 경영권 유지 또는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투자 자체가 불가능
 - 지분 100% 인수를 강제한다면, 기존 벤처창업 경영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성장을 추진할 동기를 상실하여, 지속적인 파트너쉽 구축이 어렵고,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핵심 기술인력 확보를 제약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벤처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규제 완화 검토
- “대기업”의 벤처·중소기업 투자는 그 자체가 성공모델이 되어 우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요 창출, 글로벌 시장개척 등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Google, Apple, Facebook 등 자본력을 보유한 대기업들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M&A가 자사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미국의 창조경제 활성화의 원동력
 - 미국이 세계 최고 ICT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대기업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보장하여 중소기업-대기업간 상생 생태계가 활성화된 데에서 비롯
- (주식회사의 본질 훼손 우려) 지분보유 100% 강제로, IPO를 통한 자금조달, 위험분산의 용이성 등과 같은 주식회사 체제의 장점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저해
- IPO를 위해서는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분산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증손회사의 경우 100% 지분소유 제약으로 인해, IPO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 대규모 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내 IPO 시 주식분산요건>

- ◆ 유가증권시장: 일반주주비율 25% 이상 및 1,000명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
- ◆ 코스닥시장: 일반주주 비율 25% 이상 및 500명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 ※ 미국은 M&A를 통해 특정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 시, 상장하지 않고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고, 모회사만 상장사로 운영하나,
- ※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상장사 형태보다 IPO를 통한 외부자본 동원이 유리

- 성장하는 증손회사에 좋은 투자기회가 있더라도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에 제약이 발생하여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
- (중소기업 동반성장 저해) 지분투자에 의한 합작이 아닌 오직 인수의 방법으로만 중소기업 투자가 가능해, 기존 경영진들의 사업계속이 어려움
- Google 등 소기업에서 출발한 미국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start-up 기업 투자가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중소 벤처기업 투자 좌절 사례>

◆ A사(B사의 손자회사)는 카카오톡 인수 방안 등을 사업 초기단계에서 검토한 바 있으나, 증손회사 100% 지분소유 요건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 이후 카카오톡은 중국 IT업체인 텐센트로부터 9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분 20%를 매각

- 또한 100% 지분 보유로써 벤처기업을 증손회사로 보유한다하더라도, 스톡옵션 등의 인센티브가 불가능해 지속적인 인력·기술 확보를 제한할 뿐 아니라, 근원적으로 상장이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 이상으로 성장에 제약
- (자율적 경영 침해 우려) 100% 지분 강제로 인해 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이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
- 하위 계열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본질 상, 어느 출자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가 경영의 요체에 해당함을 고려할 필요
-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손자회사 단계에서 합작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증손회사 보유를 제한할 경우, 자율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움
- 횡적 확대(자·손자회사)는 무한정 용인하되 종적 출자단계만을 규제할 경우, 지주회사 기업집단 내의 업종별 grouping에 의한 수직전문화를 제한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한 물적분할 및 M&A를 통한 사업확장 등을 어렵게 할 우려

<주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현황(예시)>

	현황	유예만료기한	해당 증손회사
두산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보유한 네오트랜스가 증손회사로 됨 (2013.7. 1년 이내 지분을 처분하거나 100%소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12.12월 (법 위반상태)	네오트랜스 1개사
CJ	자회사인 E&M이 물적분할하여 손자회사인 CJ게임즈를 설립함에 따라 CJ게임즈 자회사들이 증손회사가 됨	2013.11월	애니파크 등 4개사
	CJ대한통운 인수로 (구)대한통운의 자회사들이 증손회사가 됨	2013.12월	금호리조트 등 11개사
SK	SKT의 물적분할에 따라 손자회사가 된 SK플래닛의 자회사들이 증손회사로 됨	2015.9월	SK컴즈 1개사
	SKT의 M&A에 따라 손자회사가 된 SK하이닉스의 자회사가 증손회사로 됨	2014.2월	실리콘화일 1개사

- (개별 사안의 특수성 고려 필요) 사안에 따라서는 증손회사 보유 제한으로 인해 타법 규정 준수 또는 특정 사업의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증손회사 보유 제한과 타법 규정의 충돌 사례(예시)>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격분할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상 증손회사 보유 제한 규정과 충돌
자유무역지대 사업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필히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여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주회사는 증손회사를 통한 사업 진출이 어려움. 실제로 A지주회사 기업집단은 외국인 투자자와의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해 부산신항배후물류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지분 100%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
컨소시엄	SOC 사업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운영사·건설사·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SPC를 통해 시행되므로, 증손회사를 통한 사업진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지주회사에 비해 역차별 존재. 실제로 A지주회사 기업집단은 컨소시엄 및 SPC를 통해 항만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지분 100% 확보가 어려움

*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르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에 있어 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가능

【개선방안】

- 투자저해요인 완화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체제내 증손회사보유 “일반 허용”은 필수적
 - 외측법 개정만으로는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금조달에 대처”하는 데 근원적인 한계
 - 기술협력 강화 및 자금지원을 위한 일부 지분투자나, M&A 등을 통한 신사업 발굴, IPO 등을 통한 다양한 자금조달방법 활용 등이 불가능
-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법) 및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 100% 요건 완화
 - 비상장사는 40% 이상, 상장사는 20% 이상 규제 개선

4.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범위 축소

【현 황】

- 현행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상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이를 신고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
 - 배우자, 6촌이내 부계혈족과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 3촌이내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등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그러나, 핵가족화 등에 따라 5촌 이상 친족간 교류가 거의 없어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 등 파악이 어렵고, 실제 이들로 인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
- 이에 반해, 해당친족은 각종 규제로 개인의 경제적행위 제약(개인차원 지분투자 등)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 문제 발생
- 이는 민법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 ① 합산 3% rule이 적용되는 상장회사 감사·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의 어려움
 - ② 사외이사 자격 제한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곤란
 - ③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주주총회 보고 부담
 - ④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공시의무(5%보고 등) 부담

핵가족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6촌까지 실질적으로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

일본 및 미국*에서도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나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손자 등 대폭 축소된 자료 운영

* (일본)

-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합산 대상 : 부부관계로 한정(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3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의7)
- 공개매수 합산 대상 : 배우자 및 1촌 내의 혈족 및 인척(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상장규정 : 배우자, 부모, 부모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동경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05조 제2호)

* (미국)

-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자녀, 손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손자, 형제자매, 부모 등의 배우자(SEC Regulation S-K의 Item 404(a))

【개선방안】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

○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로 한정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통일

5. 특수관계인 간 거래행위의 중복·과잉규제 개선

【현 황】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2항〕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법인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에서 부인〔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현행법 상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세무조사 시에도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상 비용불인정, 추징금 징구 등의 제한을 받고 있음
 - 이와 더해 공정거래법에서도 동일한 규제 적용과 과징금을 추징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의 정당성은 이해하나,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각기 법률의 법리적 존재이유는 합리적이거나, 제재 실행에 있어 중복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제재 실행시 과징금과 세무상 불이익 요건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세무상 규제와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중복되어 실행되지 않도록 정비 필요

6. 순환출자금지 규정 개선

【현 황】

- 현재 법령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합병 등에 의한 순환출자 변동의 경우 각 고리별로 '형성', '강화', '적용제외'를 구분하여 규제 여부를 판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고리내 계열회사들간 합병은 외부의 추가 출자가 수반되지 않고, 합병시 발생하는 합병신주도 기존 지분관계의 단순변환에 불과하므로 순환출자에 따른 경제력 집중효과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과도한 법적용으로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방안】

- 기존 순환출자고리내 계열회사간 합병은 제한없이 허용

7. 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

【현 황】

- 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 선·해임시 대주주등의 의결권을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 제542조의12 제3항, 제4항)

<상법상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제 현황>

항 목	제한 대상
감사의 선(해)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합산 3% 제한 · 그 외 주주는 개별 3% 제한(선임만 제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선(해)임 (자산 2조 원 이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합산 3% 제한 · 그 외 주주는 제한 없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해)임 (자산 2조 원 이상)	· 모든 주주 개별 3% 제한
집중투표 관련 정관 변경 (자산 2조 원 이상)	· 모든 주주 개별 3% 제한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소지
- 대주주등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적 규제로 상장부담 및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
- 상법의 대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되는 역효과

【개선방안】

- 대주주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점 등을 감안, 원칙적으로 규제 폐지
- 동 제도의 유지시 대주주등의 의결권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모든 주가 동일하게 3% 의결권 제한규제를 받도록 개선

8. 사외이사 선임비율 강제 폐지

【현 황】

- 자산총액 1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함(상법 제542조의8 제1항)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사외이사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외이사의 선임을 강제
 - 변동성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비율이 결정되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사외이사가 많아야 한다는 이유 또한 불분명
 -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이사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함
- 이사회 전문성 결여와 위험회피적 의사결정 가능성
 -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가 대부분의 업무를 집행임원에게 위임함으로써 책임 부담은 줄어드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결여
 - 경영감독 부담은 증가하여 대규모 투자 등 공격적 의사결정을 할 때 이를 반대하거나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 미국의 집행임원(Officer) 제도나 일본의 집행역 제도는 사외이사의 자격,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자유로이 다양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운용

<한국과 미국의 사외이사 제도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사외이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으로 강제화 ·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규정 · 상장기업은 이사회 1/4 이상 · 대규모 상장사는 이사회 절반 이상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SE 상장기준 (선임규모는 자유)

【개선방안】

상법상 사외이사 비율 강제조항을 폐지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p> <p>① <u>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삭 제)</p>

9.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 규제 폐지

【현 황】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설치(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제415조의2)
 - 감사위원회는 이사 3명 이상, 위원의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불안정한 자산총액 기준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는 불합리
 - 변동성이 있는 자산(2조 원)을 기준으로 회사의 중요한 기관구조인 감사위원회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코스닥 포함)〉

년도	2000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체 수(개)	70	83	86	90	103	117	136	145	146	148	150	151

*자료 : 상장회사협의회

- 자산 규모가 추가적 규제로 작동할 경우, 규모 확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 대기업 진입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
 -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규제가 가해지거나 대기업 진입 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기피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대신 별도의 중소기업을 신설하거나 해외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향이 발생(한국은행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보유증가요인, 2007.8.29일자)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조직이므로 주주총회 선출은 부적절
 -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각국의 입법례
 -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굳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 없으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유도
- 회사법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입법례 거의 없음
 - (미국) 원칙적으로 회사의 내부기관으로 감사기관을 설치하지 않으며, 단지 이사회를 중심으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수행

*미국의 주 회사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광범위한 정관 자치를 인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정관이나 부속정관을 통해 자사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음(모범 회사법 제8.01조 (b)항)

○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선택은 회사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5년 신회사법에서는 지배구조 선택의 자유도를 대폭 확대

*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과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설치회사로 운영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방식으로 운영해도 무방

【개선방안】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 폐지 및 감사위원 이사회 선출

○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및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폐지

10. 집중투표 배제 시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폐지

【현 황】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집중투표 배제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상법 §542의7 ③)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주당 3개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한 명에게 3개 의결권을 집중 투표할 수 있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다수의 의견이 배제된 채, 소수 의견만 반영되는 지배구조 왜곡 초래

- 정관의 변경은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된 상태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시 3% 초과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대다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소수의 지분만으로 특별결의가 가능, 특별결의 취지가 훼손

*극단적인 경우 소액주주 지분이 6% 이상이고 모두 찬성한다면 대주주가 94%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반대해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이 가능(의결권 제한주식(91%)이 발행주식 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3%)과 출석의결권 주식의 2/3 이상(6%)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음)

- 의결권 제한은 소수지분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대주주의 긍정적인 기능을 약화시켜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의한 기업지배라는 부작용 초래

□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등에 대한 추가적 규제로 작용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 집중투표제 청구요건 완화 등의 다양한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도입된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관련 의결권 제한은 과도한 제한
- 상장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로 인하여 기업 공개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주식비공개화를 촉진해 장기적 주식시장 발전 저해

-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
 - 자신을 뽑아준 특정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아 전체 주주의 이익과 상충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에 치우친 나머지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업무집행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
 - 외국 투기자본이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기업 기밀정보 유출은 물론 궁극적으로 투기적 목적의 M&A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현실적으로 집중투표제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 실효성도 의문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가 있었는지 여부〉

(단위 : 개사, %)

사업연도	2008	2009	2010	2011
제1항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306	320	303	263
제2항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금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에 의하여 이사가 선임되었음	2	2	1	1
제3항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금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에 의하여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음	26	26	21	26
합 계	334	334	325	290
무응답	24	24	16	18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백서

- 세계적으로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 지배적
 - 집중투표제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이유로 도입된 후 이것이 영리법인에 확대 적용된 것임
 - 현재 미국의 일부 주가 시행 중이며, 이 중 강행 규정화한 곳은 6개주에 불과 (아리조나, 켄터키,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다, 노우스 다코다, 웨스트 버지니아)
 - *GE의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부결된 바 있으며, 미국의 중요 기관투자자인 TIAA/CREF(교원연금)는 투자방침서에서 경영의 비효율을 이유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 전 세계적으로 강행 법규화 한 곳은 러시아, 멕시코, 칠레 3개국뿐이고 유럽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집중투표제와 관련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외국 사례 없음

- 일본도 1950년 상법에 도입하였으나, 1974년 정관으로 배제가 가능하게 되자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배제

【개선방안】

- 집중투표 배제 시 의결권 제한 폐지, 장기적으로 집중투표제 폐지

<상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p> <p>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p>	<p>(삭 제)</p>

11.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 추정규정 삭제

【현 황】

- 기업결합이 실질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시장경쟁제한성 추정요건>

기준	시장점유율 기준(제1호)	대규모회사 기준(제2호)
주체	·기업결합 당사회사 - 결합회사 및 피결합회사	·대규모회사 및 특수관계인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
요건 (모두 충족)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지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 ·시장점유율 합계가 거래분야 1위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	·중소기업 시장점유율 3분의 2 이상인 거래 분야에서의 기업결합 ·기업결합으로 5% 이상 시장점유율 보유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시장점유율만으로는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시장점유율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여 시장의 동태적 현황에 관한 판단없이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

·실질적 경쟁제한성 지표

- 수평적 기업결합 : 시장집중상황, 결합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 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 경쟁상황, 신규 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수직적 기업결합 :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 혼합형 기업결합 : 잠재적 경쟁의 저해, 경쟁사업자의 배제, 진입장벽 증대

- 관련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 글로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진출산업에 대한 기업결합 제한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우려
- 실질적인 시장경쟁 상황과는 관계없이 중소기업 진출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결합 신고제도와 입법목적에도 배치

- 경쟁당국에게 입증의 편의성만을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의 규제
 - 시장점유율이라는 시장구조를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면, 해당 기업으로서는 기타 동태적 기준을 주장하여 추정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경쟁당국이 조사해야할 관련 시장의 특수성과 구조 등에 대한 조사를 사업자에게 떠넘기게 되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

- 무죄추정원칙에 위배 우려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으로 형사제재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법 위반요건을 추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제도는 위법성의 핵심요건인 경쟁제한성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지위만을 추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보다 위헌의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
 - EU는 시장점유율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을 추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미국은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경쟁당국에 있다고 규정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의 경제제한방지법 제22조a는 1999년 폐지되었음

【개선방안】

-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 추정 규정 삭제(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삭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7조(기업결합의 제한)</p> <p>① ~ ③ (생략)</p> <p>④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p> <p>1.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p>	<p>*제7조(기업결합의 제한)</p> <p>① ~ ③ (좌동)</p> <p>④ (삭제)</p>

<p>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p> <p>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p> <p>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p> <p>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p> <p>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p>	
--	--

12. 1/3 미만 임원겸임時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현 황】

- 현행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직원이 타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 부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최근의 기업환경은 생존 및 신기술 확보 등을 위해 합작·지분투자 등이 빈번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필요시 최소한의 경영참여가 불가피
- 지배적인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도 단1명의 임원겸임이 있는 경우, 기업결합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투자 실기 또는 지연 등 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
 - * 현행법상 타법인 임원의 1/3 미만 겸임시에도 '간이 기업결합신고' 의무 부과

【개선방안】

- 1/3 미만의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

13. 담합에 대한 합의추정 규정 삭제

【현 황】

- 거래분야 특성, 사업자간 접촉횟수 등 정황사실에 비추어 사업자간 공동행위를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사업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합의 추정요건: ①카르텔 외관, ②행위의 공동성을 나타내는 정황사실, ③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의사실 존재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 등

【예로사례 및 개선사유】

- 행정편의적인 제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합의의 증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쟁당국이 제시하는 것이 원칙
- 경쟁당국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합의 외형과 정황증거만으로 합의를 추정하고 사업자에게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전가
- 담합의 외형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반면, 경쟁당국은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게 됨

- 사업자 권리보호에 미흡

-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사업자에게 과징금, 벌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외형적 개연성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업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부당공동행위 시 최대 매출액의 10%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부과

- 세계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합의를 법률상 추정하는 사례는 없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합의추정제도 삭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u>⑤2 이상의 사업자가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u>⑤ (삭 제)</u></p>

14.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재편

【현 황】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유형과 사인 간의 거래관계가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형 포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분류〉

구분	유형
경쟁제한적 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성 관련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지위상 거래남용, 사업활동방해
기타	부당지원행위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 미국의 경우 경쟁제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는 사인 간 거래관계의 문제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
 - 일본 독점금지법에서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중심으로 16개 유형만 규제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총 28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규정
- 공정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사인 간 거래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수범자(기업)에게 혼란을 초래, 국가 행정력 낭비
 - 공정성의 문제는 이를 판단하는 주체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사업자들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 사인 간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함에 따라 사인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할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있음

사례: 2009서건1587, 강원도개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건

- 사실관계: 강원도개발공사는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공사를 위해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금액 미지급
- 경쟁당국 판단: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으로 제재
- 사례분석
 - 경쟁당국 심결례는 계약위반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 당사자 간 계약위반으로 사법적 해결이 원칙

【개선방안】

- 경쟁제한 행위, 소비자 피해 가능성 있는 거래행위만을 규제(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5항 후단, 제7항 및 제8항 삭제)
 - 사업자 간 거래수단을 규율하기 위한 거래강제,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폐지하고 민사적으로 해결
 - 부당고객유인 규제는 시장 경쟁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치시키되 위법성 판단기준을 공정성에서 경쟁제한성으로 변경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제72호) V, 4, (2), (가) 개정
 - 사업자간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규제하는 거래상 지위남용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하도급법 적용확대 등을 통해 문제 해결
 - 계열사 간 내부거래규제는 공정거래법과 자통법상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함으로 폐지

15. 경쟁제한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 황】

- 법원(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고시)는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낙찰자/탈락자(들러리 포함)를 불문하고 낙찰자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제22조 단서가 아닌 본문을 적용함으로써,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4.1]]

[전문개정 1996.12.30]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2조(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2012.6.19, 2014.2.11]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나치게 넓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입찰담합 과징금처분에 있어서 경쟁제한의 정도(설계경쟁, 들러리입찰, 공구분할 등)에 따른 차등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턴키/대안 입찰에서 ‘가격합의(but 설계경쟁)’가

있었던 입찰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10%를 적용한 사례¹⁾가 많은 반면, 설계경쟁조차 없는 ‘들러리(공구분할)’ 담합의 경우에는 7% 부과기준율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

【개선방안】

- 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경제적 이익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이를 고려하여 정액과징금 (20억 원 이하)을 부과하라는 공정거래법 제22조 단서의 입법취지 실현
 - 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법 해석·적용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담합 과징금처분에 있어서, 경쟁제한의 정도(설계경쟁, 들러리입찰, 공구분할 등)에 따른 차등 부과를 법령에 명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방지 및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처분 유도

현행	개정(안)
<p>*공정거래법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공정거래법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서 위반사업자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본다.</u></p>
<p>*공정거래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p>	<p>*공정거래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예컨대 부당한 공</p>

1) 가격합의(설계경쟁)를 하였으나, ‘1사 1공구 낙찰제’ 등 다른 요소를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한 사례도 있음

<p>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p> <p>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동행위의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입찰담합의 경우 가격 이외 기타경쟁 존재, 형식적 입찰참가) 등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u></p> <p>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p> <p>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본조 제1항 제1호에 추가될 내용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시할 수도 있을 것임)</u></p>
--	---

16.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

【현황 및 개선사유】

- 구조조정 중인 기업(법정관리, 워크아웃, 자유험약 등)임에도, 국책은행이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지원이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개선방안】

- 규모 등에서 일관적 기준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사항 적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고려

II. 중소기업 보호 · 동반성장

◀ 목 차 ▶

1.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	41
2. 대기업의 MRO 사업 규제 완화	44
3.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개정 ...	46
4. 신규 ICT 공공사업(Iot 등)의 대기업 참여 허용	53
5. 대기업의 공간정보산업 공공입찰 허용	55
6. 대기업의 보완용 카메라 공공입찰 허용	57
7. 대기업의 레미콘 공공시장 참여 허용	58
8. 승강설비 유지보수 정부조달시장의 대기업 참여 허용	62
9.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데스크톱 PC 대기업 비중 유지	63
10. 전동기에 대한 대기업 공공입찰 제한 해제	65
11.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참여 허용	66
12.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출 방식의 개선	67
13.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	70
14. 식품 제조업(도시락)의 대기업 진출 제한 완화	71
15.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운영기준 개정	72
16. 중소기업 졸업 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의 점진적 축소	73
17. 하도급법 대금결제기간의 합리적 개선	74
18. 하도급법내 부당한 가격결정 예외사항 추가	75
19.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내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76
20.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수급사업자 공지의무 추가	80
21.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중규제 완화	81
22. 의무고발 요청제도 개선	83

1.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일몰제, 쿼터제 도입)

【현 황】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 2,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 2007년부터 운영하며, 지정 공고 후 3년마다 재지정, 2015년 12월 총 204개 제품을 지정하여 대기업 관수시장 참여 제한
- 공공구매를 계속사업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현행법 상 대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신청품목 중 경쟁제품에 지정된 품목은 지속 지정되고 있음
 - 예시) 전자칠판의 경우 2009년 지정 이후 추가 2회(2012년, 2015년) 재지정되어 2018년까지 보호 예정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중소기업들은 공공시장에만 안주하고 민수 및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작용 발생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공구매를 계속사업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현행법 상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업철회로 인한 기업존속 위협 상존
 - 이에 기존 공공구매분야에서 계속 성장해온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해 공공구매 분야에서 퇴출될 수 있어 오히려 대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효과 초래

【개선방안】

□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3년(최대 6년) 사업영역 보호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도입**하여 지정기간 이후 경쟁 제품에서 해제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지정일부터 3년간 운영하고, 총 1회(3년) 연장 가능한 일몰제 방식 운영 중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개정(안)>

현행	개정(案)
<p>[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p> <p>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으로의 지정 타당성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공고된 경쟁제품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제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 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긴급한 조달구매 또는 경쟁 제품 미지정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정되는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p> <p>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으로의 지정 타당성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공고된 경쟁제품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제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 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긴급한 조달구매 또는 경쟁 제품 미지정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정되는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p> <p>④ <u>경쟁제품 지정 시 이전 지정된 제품은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품에 한해 최대 1회 재 지정하여 6년간 지정할 수 있다.</u></p>

□ 경쟁제품을 지정하여 공공시장 물량 100%를 중소기업에게만 할당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대·중견기업들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로 쿼터를 배정하여** 대·중견기업들의 일방적 피해 방지

※ (예시) 대기업 3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쿼터 지정

-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장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대·중견기업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개정(안)>

현행	개정(案)
<p>[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p> <p>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으로의 지정 타당성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소기업 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공고된 경쟁제품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제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 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긴급한 조달구매 또는 경쟁제품 미지정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정되는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p> <p>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으로의 지정 타당성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소기업 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공고된 경쟁제품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제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 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긴급한 조달구매 또는 경쟁제품 미지정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정되는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p> <p>④ <u>경쟁제품 지정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보장비율을 마련하여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보호한다. 다만, 기업규모별 참여 보장비율은 품목별 합의에 따라 산정한다.</u></p>

- 기존 공공구매 분야에서 계속영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5년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p> <p>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p>	<p>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p> <p>①----- 정한다. 다만, <u>공공구매 분야에서 계속영업을 해온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u></p>

2. 대기업의 MRO 사업 규제 완화

【현 황】

- 대·중소기업의 상생취지에서 대기업 영업을 제한하는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소모성자재구매대행) 가이드라인 운영 중(동반성장위원회 MRO 가이드라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기업 MRO의 경우, 3,000억 원 미만 고객사에 대한 신규영업 제한
- MRO가이드라인을 3년간(2011년~2014년) 운영한 후, 두 차례에 걸친 동반성장위원회 회의결과, 2015년말까지 MRO 시장보호/육성을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가이드라인 영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안을 체결하도록 압박 중(협약 체결전까지 가이드라인은 지속 준용)
 - MRO 시장보호/육성을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시 기존 MRO가이드라인 대체 예정
- 공공기관 물품 구매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거래 하도록 제한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현재 준용되고 있는 MRO가이드라인은 인위적인 시장규제를 통해 산업재 유통시장 전반을 침체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3,000억 원 미만 영업규제는 정당한 근거가 없고,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그 효과가 불분명하며, MRO 서비스 이용 희망기업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소·중견기업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개선방안】

- 인위적 시장규제 형태의 기존 가이드라인 폐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
- 공공기관 소모성자재 구매를 합리화하도록 법률 개정(예시 : 공공기관의 소모성자재

일정 비율이상은 중소기업으로 한다)

기대효과

- 산업재 유통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외업체 진입에 대한 대비
-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상공 업체가 전문MRO社를 통한 판로 확대 효과(실질적인 동반 성장 가능)
- 구매합리화를 통한 기업 생산활동의 효율성 및 성장을 지원하는 구매전문기업으로 발전
- MRO 내수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확대

3.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개정

【현 황】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전체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전면 제한(2013.1.1~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③)

○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의 예외 인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②)

*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분야

- 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사업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 ③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고시하는 사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3.12.30, 2014.6.3>

1. 삭제 <2015.12.22>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3.12.30>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 연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은 80억 원 이하의 사업 참여 불가
 - 연매출액 8천억 원 미만 대기업은 40억 원 이하의 사업 참여 불가
- 시설·장치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대기업 참여 불가
- 국내 소프트웨어 및 IT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해외시장의 진출을 통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IT융합산업은 IT기술이 다른 산업과 결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존산업 성장한계 극복 및 신시장 창출 등 미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IT융합산업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자동차·조선·건설·섬유·기계·의료·국방·에너지·조명·로봇산업 등과 IT가 융합된 산업이 2020년 세계시장 기준 약 3조 6,0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대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사업 수행을 통한 Reference 확보가 필수적이나, 공공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되어 Reference 확보와 해외진출이 곤란
 - *특히,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외국정부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정부 등과의 공공사업 수행 Reference가 필수
 - SW비중이 10~20%에 불과한 정보통신/전기통신공사 사업과 IT융합사업도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SW사업으로 분류하여 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대기업이 투자하여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한 솔루션을 적용·업그레이드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제한되므로, 관련 투자위축 및 중소기업 IT융합사업 활성화 곤란
- 또한, 고도의 기술산업인 상하수도 수처리 기술은 단순 설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아니라 시설의 감시·제어를 위한 S/W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대기업이 단순 설비만을 제공하게 되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개발한 상하수도 수처리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가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면 수처리사업의 침체로 이어짐
-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수처리 산업에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공공시장에서의 건설·운영 실적이 매우 중요

* 2020년 세계 물산업 시장은 규모는 800조 원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세계 물산업 시장 점유율은 2.1%에 불과

- 고시에서 정의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으로 인정 고시하여 기업이 국내·외 사업 발굴과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SW산업 및 이를 활용하는 신성장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개선방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 개정

- 대기업의 사업 참여 불가 하한선을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완화

현행	개정(안)										
<p>*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p> <p>①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업체</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금액의 하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80억 원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40억 원 이상</td> </tr> </tbody> </table>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p>○ 고시 개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업체</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금액의 하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억원 이상</td> </tr> </tbody> </table>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	10억원 이상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	10억원 이상										

대기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S/W사업의 범위를 확대 적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생 략) ②(생 략) 1. ~ 2.(생 략)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u>사업</u> 으로서 대기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좌 동) ②(좌 동) 1. ~ 2.(좌 동) 3. ----- <u>-----사업 및 시설 또는 장치와 분리하여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 시설 또는 장치의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로서 -----</u>

대기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Reference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정부사업’ 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1.(생 략)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1.(좌 동) 2. ----- ----- ----- ----- -----(삭제)를 말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 SW 비중이 일정비율 미만인 사업은 대기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으로 지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생략)~ 1. ~ 3.(생 략) (신설)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② (좌 동) 1. ~ 3.(좌 동) 4. SW사업비 비중이 전체사업금액 대비 20% 미만인 사업 ③(좌 동)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절차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별 심의방식을 폐지하고, 법에 명시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 밖의 국가안보 등 관련된 사업에 대해 고시에서 추가적인 제한사항을 적용해서는 아니 됨

○ 고시에서 대기업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으로 정의된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겠다는 추가적인 제한사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

○ 이외 사업의 적정기간 확보 및 적정 입찰공고기간 준수를 위하여 현재 45일로 명시된 처리기간을 즉시 검토 후 처리하여야 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 ~제6조	현행 유지
<p>*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u>종합적으로</u>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p>	<p>*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부터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 분야에 대기업이 선투자

<p>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p>	<p>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R&D결과물을 포함이 요구되는 경우</p>
<p>(신설)</p>	<p>5. 해외수출을 위g여 국내 수주 이력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p>
<p>(신설)</p>	<p>6. ICBMS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신기술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p>
	<p>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업·공사 또는 서비스와 융·복합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중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비(개발, 유지보수, 정보화 전략계획수립비)의 비중이 100분의 20미만인 사업의 경우</p>
<p>5. <u>운영사업</u>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p>	<p>8. <u>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u>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p>
<p>(신설)</p>	<p>9. <u>이전 사업에서</u> <u>적격인 소프트웨어사업자</u>를 선정하지 못하여 유찰되어 참여제한 전면 대상사업에서 제외 되어 대기업이 수행한 경우</p>
<p>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서식의 인정요청서에 <u>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국가기관 등의 장이 별지 서식의 인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한 사업이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용사업으로 인정한다.</u></p>
<p>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p>	<p>(현행과 같음)</p>
<p>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p>	<p>(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인정 요청서를</p>

<p><u>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u>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별표서식</p>	<p><u>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즉시 통보한다.</u></p> <p>(삭제)</p> <p>(변경)별표서식 <u>-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서식으로 변경</u> * <u>고시에서 정의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항목 이외 추가적인 절차와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u></p>
---	--

기대효과

- 공공기관 사업 품질 향상

4. 신규 ICT 공공사업(lot 등)의 대기업 참여 허용

【현 황】

- 2013년부터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대기업은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및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이외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금지
- 2015년 11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신산업분야 운영지침’ 을 마련하여, 신성장 사업부문(ICBM)에 한정하여 미래부의 내부기준을 통과할 경우,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²⁾으로 인해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가 금지된 이후, 중소SW기업 보호/육성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2015년 8월 한국경영학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실효성 연구 발표회’ 를 진행하면서 법 개정 이후 공공 정보화사업에 참여한 중견/중소 SW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하락³⁾하고, 공공 SI 품질에 불만이 늘어나, 애초 중소 SW업체 육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발표
 - 미래부도 자체적으로 同法 시행의 효과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국내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외국계 대기업과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외국 자본의 국내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

2)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3) 자료 : 한국경영정보학회 2015.8.발표. ‘SW산업진흥법 개정 실효성 연구 발표회’.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에서 공공정보화 사업의 비중이 10%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16.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2012-2013 외국계 기업의 국내 주요 공공사업 수주 현황>

회사(1대주주)	사업 내용
한국 IBM (네덜란드계 코리아홀딩스)	-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3억7천만원)
대우정보시스템 (중국계 글로리초이스차이나)	- 한국고용정보원 차세대 고용보험 시스템 (150억원) - 외교통상부 국가외교통상 통합관리시스템구축(40억원) - 안전행정부 국가정보지원 개방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45억원) - 국방전산원 기반 통합 사업(60억원)
쌍용정보통신 (일본계 쌍용양회)	-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회정보시스템(234억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사업(14억원) - 해군 전술자료체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36억7천만원) - 해군 지휘통제체계(KNCCS)(89억원)

자료: 조달청

-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영역 즉 ICT의 신성장 분야에서 SW적 요소는 필수불가결. 정부/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발판 삼아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의 참여 제한 뿐 아니라 해외 사업 기회도 잃게 된 상황
- 미래부가 2015년 11월 '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신산업분야 운영지침 '을 통해 ICBM영역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 하지 않고 있음
- 대기업이 참여하여 충분히 역할을 하되,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이 필요

【개선방안】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S/W 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를 허용하는 등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 필요
-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S/W사업의 범위를 시설·장치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 적용

5. 대기업의 공간정보산업 공공입찰 허용

【현 황】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사업(GIS)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지경부 고시 제2012-87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중기청 공고 제2012-159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공공입찰이 불가능하고, 이외 기업도 매출액 8천억 원을 기준으로 참여 제한

<매출액 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준>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자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지경부 고시 제2012-87호)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국토정보지리원에 등록된 측량업체는 400여 개 정도이고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단 1개에 불과(2012년 3월 기준)
 - 상위 3개 중소기업이 정부발주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 2%에 불과한 대기업이 공공발주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배치
- 일자리 창출 저해
 - 정부가 발주하는 공간정보산업은 단위 사업 당 규모가 20억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기업의 사업영위를 어렵게 함

- 국가측량과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에 참여하던 A사는 2006년 공간정보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정리하고 관련 인원의 사직서를 받고 있는 상황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60명의 인원을 정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을 제외해야 함

6. 대기업의 보완용 카메라 공공입찰 허용

【현 황】

- 보안용 카메라(46171610)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으로 지정(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보안용카메라 : 영상감시장치(4617161001), CCTV카메라(461716100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권고
- 이는 소비자가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품질, 제품사양)을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고, 중국산 기업의 저품질 OEM 제품이 난립 설치로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대기업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

【개선방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항목 제외로 품질 및 성능(가격)을 비교 제품 선정 권고

기대효과

-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품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품질(성능), 가격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 기관 사용기회 확대로 선진화된 CCTV 시스템 구축과 예산 절감 기회 확보 가능

7. 대기업의 레미콘 공공시장 참여 허용

【현 황】

- 레미콘 제품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발주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 중소기업청공고 제2009-184호 중소기업간경쟁제품·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공고, 중소기업청공고 제2012 - 237호)
- 2012년 까지 서울 도심 7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공사(관수물품)에 중견기업의 레미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 서울 도심의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관악구, 동작구 등 7개 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레미콘의 적정납품이 곤란하여 예외로 함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구매)에 따라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설계·시공 등을 모두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일괄수주공사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 관수시장 : 공공기관의 수요에 의해 조달청의 입찰공고 및 낙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
 - * 민수시장 : 일반건설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시장이나, 최종 수요자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은 관수시장으로 포함(2010년부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직접 생산·공급하는 제품으로서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 중소기업청장은 경쟁품목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 쉬운 품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공고할 수 있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의 예외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공공기관의 직접구매가 의무화되고 있음)이므로 중견기업 레미콘업체는 사실상 규제에 의한 공공시장 참여가 불가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조항(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 재난관련 공사로써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과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 중소기업청공고 제2012 - 237호(2012. 12. 27)에 따라 2013년부터 수도권(서울경인지역) 지역에 한해 20%범위내 중견기업에 대한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여전히 참여제한을 받아오고 있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레미콘 제품은 통상 레미콘 생산 후 90분 이내에 레미콘을 타설해야 하는 반제품으로서 재고를 두고 납품할 수 없는(생산후 미사용시 폐기처분) 특성상 충분한 생산능력과 운반차량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함
- 레미콘공장의 입지 및 소비자의 제품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입지와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 생산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신설 중소기업 및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생산능력 및 믹서트럭보유 현황(2014~2015년)〉

구 분			수 도 권		지 방		전 국	
				비율(%)		비율(%)		비율(%)
2014년	생산능력 (m ³ /hr)	중견기업	34,400	44.8	22,830	11.4	57,230	20.7
		중소기업	42,410	55.2	177,030	88.6	219,440	79.3
		합 계	76,810	100.0	199,860	100.0	276,670	100.0
	믹서트럭 보유대수	중견기업	3,480	46.9	1,715	14.4	5,195	26.8
		중소기업	3,936	53.1	10,231	85.6	14,167	73.2
		합 계	7,416	100.0	11,946	100.0	19,362	100.0
2015년	생산능력 (m ³ /hr)	중견기업	33,670	42.1	21,780	10.5	55,450	19.3
		중소기업	46,250	57.9	186,230	89.5	232,480	80.7
		합 계	79,920	100.0	208,010	100.0	287,930	100.0
	믹서트럭 보유대수	중견기업	3,539	45.7	1,567	12.9	5,106	25.7
		중소기업	4,203	54.3	10,565	87.1	14,768	74.3
		합 계	7,742	100.0	12,132	100.0	19,874	100.0

- 레미콘제품은 고유한 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중견기업의 국내 공공시장 참여배제 따른 매출감소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 의무화로 2013년 기준 국내 전체 레미콘 수요의 약 32%(4,300만^m)이상에 해당 하는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 중견기업 참여가 허용된 2009년 기준 조달청 구매량 25,466,096^m으로 총 출하 대비 21%수준 이었으나,
 - 2013년 조달청 구매량이 2009년 대비 170% 증가한 43,502,140^m로 총 출하대비 31%이상 급증 하였음에도, 오히려 중견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였음

<2010년 이후 중기간경쟁 제도에 따른 공공구매 레미콘량 추이>

(단위 : ^m,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달청 구매공고량	30,225,650	37,745,300	43,502,140	41,976,303	41,453,966
레미콘 총출하량	121,109,857	128,268,069	138,389,395	136,445,236	152,216,614
공공구매 점유비	24.96	29.43	31.37	30.76	27.23

※조달청 연간 레미콘 구매입찰 공고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화로 2009년 한해 중견기업이 생산 납품한 약 1,000만^m 이상도 중소기업 물량으로 전환하였음(중견기업 민수 출하의 약 34%)
- 중소기업자간 경쟁은 공정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법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1항)유형으로 정부가 거래의 상대방(중견기업 배제)을 엄격히 배제하고 있는 원인으로 규제적 요소가 강함
- 자재 구매자(조달청)와 자재 사용자(발주처 및 시공사)의 이원화로 자재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 기존 일괄 발주일 경우 시공사가 자재구매 및 시공을 모두 책임지므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하나,
 - 자재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하자의 원인이 자재에 있는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한 법률분쟁의 사례가 증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시공사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선방안】

- 자유시장의 경쟁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중견기업 레미콘사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일반경쟁의 원칙을 도입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영역을 구분(쿼터제)하여 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산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소비자(사용자)의 선택권을 부여, 건설자재 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레미콘 품목을 재검토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수도권 외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중견기업 참여를 허용함이 타당

8. 승강설비 유지보수 정부조달시장의 대기업 참여 허용

【현 황】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승강기 유지보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기청 공고 제2012-159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승강기의 안전문제 발생 우려
 -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포함)의 동작 및 제어회로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으로 제어되어 제조사가 아니면 정확한 유지보수가 어려움
 - 제조사가 아닌 중소 보수업체가 정확한 제어 프로그래밍 내용을 모르고 점검 보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한 상태에서 임시운영 실시
-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 저해
 - 에스컬레이터는 일부 대기업만이 국내에서 소량생산하거나 중국, 동남에서 저가로 수입·설치되고 있어 중소 보수업체는 동작 및 제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매우 어려움
 - 지하철 역사, 공공기관의 승강기의 동작 및 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중소 보수업체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초기 설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배치
 - 현실적으로 공공발주 승강기 유지보수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수, 실적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800여개의 중소기업 중 4~6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 철도공사, 지하철역, 공공기관의 관련 실무자들도 제조업체인 대기업이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

【개선방안】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목록 승강기 유지보수 삭제

9.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데스크톱 PC 대기업 비중 유지

【현 황】

-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2년 데스크톱 PC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매년 관수시장 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7호)
- 정부조달컴퓨터협회는 데스크톱 PC 등 개인컴퓨터 품목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신청(2012,7월), 중소기업청은 본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2012.12월)
- 중소기업청 공고상 대기업은 데스크톱 PC 관수시장 점유율을 2013년 50% 이내, 2014년에는 25%까지 낮춰야 하고, 2015년 이후에는 관수시장 참여 전면 불가(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7호)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OEM 및 부품 중소기업, 유통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및 일자리 감소
 - 2013년 들어 2012년 대비 대기업 OEM 및 부품납품 중소기업의 매출이 약 17% 감소하였고, 대기업 공급 제조물량 감소로 1개 OEM 업체는 사업장을 폐쇄
 - 대리점 등 대기업 거래 소상공인당 평균매출은 2012년 32.1억 원에서 2013년 21.8억 원으로 32% 감소하였고, 정부기관 데스크톱·일체형컴퓨터 관련 평균 매출은 2012년 22.1억 원에서 2013년 11.7억 원으로 47% 감소(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사)
 - 대기업 거래 소상공인들의 58.6%는 매출액 변동의 가장 큰 요인으로 데스크톱 PC 품목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지목(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사)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이후 OEM·부품중소기업 일자리는 약 121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통 소상공인 일자리 역시 약 477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중소기업 A/S 및 부품공급 지연으로 유통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 유통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제품 납품 시 A/S 등은 대기업에서 직접 수행해주지만,

중소기업 제품 납품 시에는 유지보수 및 부품수급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

- 향후 소상공인 우선구매품목 지정으로 데스크톱 PC 관련 중소기업의 관수시장 비중 확대 시 유통 소상공인들의 A/S 및 부품공급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개선방안】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개편, 데스크톱 PC 관수시장 대기업 비중 50% 유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공고>

현행				개정안			
산업군	제품명	세분류	특이사항	산업군	제품명	세분류	특이사항
전자· 정보통신	개인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2013년 50% 이내, 2014년 25% 이내의 공공조달시장 범위 내 에서 예외	전자· 정보통신	개인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50% 이내 공공조달시 장 범위 내에서 예외

10. 전동기에 대한 대기업 공공입찰 제한 해제

【현 황】

- 공공기관 발주(한전/5개 자회사, 농어촌공사 등) 전동기의 추정금액이 210백만원 미만일 경우, 대기업의 입찰을 제한(2013. 5월 시행, 한전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확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유자격 및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대기업의 참여 불가 시 2개 업체(한성중공업, 하이젠)로 한정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추정금액 210백만 이상 입찰에는 중소기업도 참여(한성중공업, 하이젠)하여 대기업의 역차별 요인이며, 중소기업 2개사만을 위한 특혜조치
-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전동기는 기존 설비의 Spare 교체 물량으로 설비운영팀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고 품질이 확보된 원제작사의 제품을 원하고 있으나, 관련규제로 인해 기존제품이 사용이 불가하여 발전소 운영의 호환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
 - 공공기관의 설비운영팀에서는 조달청 및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중요설비는 기존 제품(대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H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
- 전동기의 경우, 해당 가격이 고압 50백만원~200백만원, 저압~10백만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특별법으로 인한 대기업 입찰규제로 일반 입찰 참여는 물론, H사가 기 납품한 전동기임에도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
 - 입찰참여 불가 금액은 약 200억 원/년간 150억 원
- 이는 H사의 “관공서 시장 진입제한”으로 대상 시장이 축소(매출, 이익 감소)되었으며, 발전소 입장에서 제품 호환성, 품질 수준 불평등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 공공기관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중소기업만의 입찰이 아닌 대기업의 유자격 등록 및 입찰 참여 허용
 - 특히, 전동기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핵심기와 연동되는 제품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

11.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참여 허용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3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취지로 대기업의 입찰참여 자체를 배제하고, 특례제정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575호(2012.05.09.)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업체 참여확대 관련 특례변경” 공문)
 - 전 공공기관에 대기업의 참여제한지침을 하달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입찰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
 - 기존 거래중인 경우에도 계약 완료 시, 재입찰 참여 불가
- 중소·중견기업의 공공기관 급식참여 확대를 명목으로 법적근거 없이 대기업의 공공 급식시장 진입을 제한
 -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시장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逆차별

【개선방안】

-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대한 대기업의 규제를 해제

12.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출 방식의 개선

【현 황】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부, 세탁비누, 고추장, 외식업 등 100여 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제한받고(동반성장위원회 권고사항), 3년간 지정하고 1회 연장 가능

-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합의도출 및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업 미이행 시 중기청 사업조정제도로 이양(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중소기업적합업종이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주요 산업군인 가공식품산업은 중후장대형 산업에 비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이슈의 여지가 많음
 - 중소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은 산업(자동차, 중화학, 철강 등)의 경우, 적합업종지정이 거의 없는 반면, 중소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식품, 서비스산업군에 사회적 이슈와 적합업종에 대한 요구가 많음
 - 국내 산업중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약한 산업군이 바로 식품산업군
 - 대한민국 산업별 경쟁력: 전자 1위, 자동차 4위, 철강4위, 조선 1위, 식품100위권 밖

- 적합업종제도로 인해 사업 확대, 사업방식에 대해 해당기업은 불편을 많이 겪음
 - C사는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충분히 준수하고 있으나, 여러 품목에 걸쳐 대응해야 함에 따라 시기마다 현황 모니터링, 협의체 대응, 자료 작성, 대내외 소통, 이슈관리 등에 추가업무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C사의 사례 >

- 2011년 말 적합업종제도에 9개 품목(단일기업 최대)이 지정되어 성실한 조정협의체 참가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준수해왔고, 4년째 단 한번도 중소기업측이나, 동반위로부터 지적사항 없이 이행해옴
- 이후 품목별 3년이 지나 재협의과정에서 해제된 품목이 있었고, 현재는 5개 품목이 재지정되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 중
 - ※ 2011년 ~ 2014년 9개 품목 : 장류, 김, 두부, 김치, 면류, 옥수수유, 어묵, 단무지, 김치
 - ※ 2014년 말 이후 5개 품목 : 장류, 두부, 단무지, 어묵, 면류 이행사항 이행 중

- 특히, 대기업에 대한 기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대중적 인식이 대기업이 미치는 못하는 중견기업은 사업 확장의 활로에 제약을 받음
- 또한,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중소기업 업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산업왜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 시장내 자율경쟁에 대한 왜곡이 발생. 특히,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업종, 품목, 서비스간 창조적 재결합을 통한 산업발전의 동력을 저해하고, 외국계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역차별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적합업종 신청단체(조합/협회)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통의 이익과 대기업의 사업조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부 중소기업의 이익과 일부 대기업의 일부경로에 대한 제한적인 이익을 조율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상호이슈 메이킹과 대응적인 경향이 매우 강함
- 대부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로 기업 자체 부서간 시너지를 통한 경비절감과 운영시스템 효율화에 장애요인이 되며,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개선 및 개혁은 미비하고, 단순시장의 규제로 인해 사업기반 약화 및 해외자본 진출 확대
 - 예시) 웨딩, 베이커리 시장 등
-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
-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해당산업내 밸류체인의 기능적인 책임과 역할을 적절히 구분하여, 글로벌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
- 적합업종제도는 미합의 시 동반위가 자체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안 미이행시 강제화(중기청 사업조정)가 가능한 점에서 과거 실패한 고유업종의 부활

- 적합업종 지정 편익이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 차지하거나, 산업현장의 생산 차질 발생 등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부작용 다수 발생
 - [LED사례] 외국계 매출규모는 2013년 현재 767억 원으로 적합업종 지정 이전인 2010년 100억 원 대비 약 7.7배 성장, 시장점유율은 2.6%에서 19.4%로 16.8p 증가
 - *필립스, 오스람, GE 등 외국계 대기업은 직관형 LED, 면광원, 스탠드 등 국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한 품목도 다수 판매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
 - [금형사례] 대기업은 금형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부족, 기술 부재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도 금형제작이 불가능한 상황
 - *외주생산 시 납기 충족을 못하는 긴급물량일 경우, 협력사 캐파문제로 성수기 추가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계열사 금형기술 및 관리능력 부재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도 동반위 권고사항 위반 대상
- 한-미 FTA, 한-EU FTA, GATS 등 국제협정 위반 가능성 존재
 - 한-EU FTA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투자개방을 양허하고 있어, 적합업종 선정 시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 GATS 협정상 총 155개 서비스 분야 중 78개 분야(도·소매 등)를 양허(1995년)한 바 있어, 적합업종 선정 시 GATS 협정 위반 문제 발생

【개선방안】

- 적합업종에 의한 대기업의 사업영역 규제방식보다 적합업종 이슈가 있는 산업 내 동반성장베스트사례 도출 방식으로 진화방식으로 개선
 - 당초 도입취지의 효과가 없는 시장규제방식보다 해당 산업군内の 대기업은 신규 시장 창출, 글로벌 진출, 품질, 식품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산업생태계 내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오히려 규제방식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지원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관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장기간 투자 및 개발연구가 필요한 사업군,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서 해제
- 적합업종제도의 폐지 또는 지정품목 최소화·엄격한 일몰 적용

13.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

【현 황】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 포함)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중소 협회·단체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중소유통 분야로 간주 품목제한 신청(대표중기 적합업종 지정 품목 문구)
- 대형마트 판매 품목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 혼재. 이에 따른 품목별 중소 협·단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시 대형마트 판매 품목 대다수 해당 가능성 상존
 - 불필요한 논의로 인한 자원 소모
- 적합업종 접수, 검토에 따른 조정협의회 참석 등 불필요한 논의로 인한 내부 자원 소모 및 언론 리스크 발생 우려

【개선방안】

- 서비스업 중 소매업 제외, 품목제한 신청 불가 등 단서 조항 마련
- 동반위 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중소 협·단체 신청 사전 검증

14. 식품 제조업(도시락)의 대기업 진출 제한 완화

【현 황】

-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에 의해 현재 도시락 공장(식품 제조업)은 대량생산임에도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대기업 진출을 규제
 - 동반성장위원회(2011년)는 도시락과 면류, 옥수수유, 단무지 등 38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 동반성장위원회(2014년)는 도시락과 면류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대기업 참여 규제권고)
- ☞ 대기업 진출 심화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식품분야 위주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CVS의 주력상품(선진국 일본도 유사)인 도시락류는 아웃소싱 위주로 중소기업에서만 제조함에 따라 B사의 직접적인 투자가 어렵고, 도시락의 품질 및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상황
 - 이는 기계를 활용하여 대량생산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대기업 진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락의 연구개발, 위생, 생산성 향상등에 대한 개발지도와 공동개발 협력업무는 참여가 가능하나, “직접적 투자/관리“보다는 효과성이 매우 미비
 - 공급망 관리를 하는데 있어 도시락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전과정의 관리 어려움
 - ☞ 중소기업 협력(아웃소싱)업체 경영권 침해 불가) 직접적인 투자·관리시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이나 미비점을 개선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개선방안】

-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외식업종 규제사항을 세분화하여 도시락의 품질 및 생산량에 관리를 위해 소량생산이 아닌 대량생산의 도시락류는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도록 허용
 -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투자한 경우, 중기적합업종 지정대상에서 제외

15.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운영기준 개정

【현 황】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계량화된 지표로 동반성장지수를 도입 운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평가 대상 기업의 범위반시 등급 강등으로 제재 실효성 강화 [제38차 동반성장위원회 심의 제38-1호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4조(제재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등급을 재조정 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급을 두 단계까지 강등할 수 있다.</p>	<p>*제14조(제재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급 강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u>두 단계까지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u> <u>단, 제1호의 경우 위원회는 평가대상기업의 법규 위반행위 등 여부를 관련 처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규 위반 행위 등으로 동반성장에 반하는 정도가 중대한 경우 2. 관련 처분기관(공정위, 산업부, 중기청 등)의 제재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예로사례 및 개선사유】

- 기존 범위반시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감점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위 별도 등급강등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평가 대상 기업은 이중 제재 조치를 받게 됨

○ 현행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평가 범위반 제재 조치 항목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공정거래법 위반시
경고(△3), 시정명령(△15), 과징금(△20), 고발(△25)	경고(△1), 시정명령(△3), 과징금(△4), 고발(△5)

- 해당 기준(2단계 강등) 적용시 범위반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개선 노력 동기부여 저하에 따른 당해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중단 등 역효과 발생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이중 제재 조치 조항 삭제

16. 중소기업 졸업 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의 점진적 축소

【현 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입찰로 인하여 계속 중소기업에 머물다가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기업에게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성장의 부담요인
- 상장법인의 감사 선임·해임 시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3%)함으로써 상장기업에 큰 업무 부담과 함께 주주 1의결권 이라는 원칙에도 위배
-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편의성에 비해 기업홍보(IR), 회계감사 등 공시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너무 큼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기업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입찰제한 등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며, 이러한 입찰제한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은 고사되고, 오히려 중국 등 해외업체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됨
- 또한 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 감사 선임·해임 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도 좋으나, 1주 1의결권 원칙의 위반이며, 이러한 감사선임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금전적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는 등 기업경영활동이 크게 위축
-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 세법 등에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는 10%에서 30%로 확대되는 등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음

【개선방안】

- 중소기업들이 피터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기업에 대해 모든 측면에 있어 점진적으로 기업이 영업활동, 재무활동, 세무활동 등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 혜택 및 입찰 등을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축소

17. 하도급법 대금결제기간의 합리적 개선

【현 황】

- 하도급법 상 대금 결제기간의 적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중견기업 간 차별이 있음
 - 2016년부터 하도급의 적용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지만, 대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 중소기업/중견기업 발주와 대기업의 납품에 대한 거래는 하도급 법상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대금결제제도 상 차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4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중략) <신설 2015.7.24., 2016.3.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최종 발주자가 아닌 중간 발주자(위탁자)로서의 대기업은 상위 발주자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위 수탁자(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만을 갖는 비합리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거래간 대금결제조건 등에 차이가 발생시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수
 - <예시>
 - 중간 발주 대기업은 상위 발주자로부터 납품 대금이 수개월에 걸쳐 회수. 하지만
 - 그러나 하위 수탁자(중견기업/중소기업)에는 60일 이내에 지급(주요 대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실제로는 당월 현금 지급)

【개선방안】

- 현재 60일내 하도급대금 결제기한을 위탁 대기업이 상위 발주자로부터 받는 기한내 지급으로 변경

18. 하도급법내 부당한 가격결정 예외사항 추가

【현 황】

- 현행법 상에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보며, 업체가 스스로 가격인하를 제안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 증빙이 없음을 사유로 부당한 가격결정으로 볼 수 있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는 동일부품에 대해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에서 수급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국내업체가 타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음

【개선방안】

-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예외사항 추가

<관련법안 : 하도급법 제4조 개정(안)>

현행	개정(案)
<p>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p> <p>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p> <p>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다만,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후 가격을 인하하여 제시하고 원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19.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內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현 황】

-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적 보호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적으로 기술유용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 기술보호지침)
- 또한, 중소기업 기술 관련 규제는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음
- 하도급법 제2조(정의) 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8항은 “기술자료”의 개념에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2조의3)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이러한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산업부, 공정위, 중기청 등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신설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모호한 규제가 난립하게 되어,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
-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경영상의 정보 등을 취득함으로써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기술자료의 개념에 경영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 기술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자료 개념'이 중소기업의 경영상 정보까지 포함하는 등 의미가 모호하고 범위가 방대
 - 기술자료의 개념에 경영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기술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며, 경영정보의 제공시에도 매번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만 증가시키는 것임
-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거래상 중소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수많은 자료 중 어디까지가

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인지 실무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사실상 모든 자료를 기술자료로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음

<p>※ 참고 : 각 법률에서 정의된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상생협력촉진법상 기술자료 :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 : 중소기업 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

- 보호받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기술자료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마다 기술자료제공 요청서를 교부해야 함
 - 그런데 사실상 모든 자료에 대해 매번 요청서를 교부해야 한다면, 사소한 자료 요청에도 번거롭고 복잡한 서면교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서류를 장기간 보관 (최소 3년)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부담이 발생
-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글로벌 표준규격 (QS 9000 등) 부품품질의 인증을 위해 승인원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그런데 하나의 제품에도 수많은 부품이 탑재되고 부품마다 승인원을 받아야 하므로,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그 양은 가히 천문학적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자료조차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관하게 한다면 불필요한 비용 및 업무 증가로 인해 결국,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더욱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영세한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서면을 교부하고 보관하는 업무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과중. 또한 이처럼 과도하고 모호한 규제는 결국 사업자로 하여금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위축시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임

-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개선방안】

-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자료”의 개념에서 영상의 정보를 삭제
 - 법령 개정에 따라 공정위 심사지침도 관련 부분을 개정

<관련법안 : 하도급법 제2조 개정(안)>

현행	개정(案)
<p>*하도급법 제2조(정의)</p> <p>⑮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p> <p>*동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등)</p> <p>⑧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p>	<p>*하도급법 제2조(정의)</p> <p>⑮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p> <p>*동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등)</p> <p>⑧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의 정보</p> <p>(※ 이와 관련된 심사지침도 개정 필요)</p>

- 보호받을 기술자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및 정부의 지침 등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는 그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번 시행령 제정時 보호받을 기술자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정
 - 즉,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 ①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한 기술자료
 - ② 기술입치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기술자료
 - ③ 중소기업이 대외비로 표시 및 관리하는 기술자료로 구체화하여 보호받을 기술자료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명확히 기준을 설정해줄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임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바, 임치된 기술자료를 보호대상으로 정할 경우, 기술임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
- 대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애써 개발한 기술자료를 보호해줘야 하지만 중소기업 또한 스스로 자사의 기술자료 중에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같은 보호장치로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임치를 한 이외 기술자료는 대외비 표시 등을 통해 보호를 받도록 자구적 노력을 해야 함
- 따라서 상기 3가지 기술자료에 한해서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보호하도록 시행령, 기타 하위법령에서 규정 필요

< 기술자료 구분 예시 >

□ 중요 자료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공정도, 작업지시서, 설계도, 공정 배치도, 임치기관에 임치된 기술자료
생산 관련	도면,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 및 설비 배치도, 운용매뉴얼, 공정기술
개발 관련	승인원, 도면, S/W 소스코드, 작업지시서, 개발 샘플 제작 리포트, 부품규격서, 부품사양서
구매 관련	생산원가내역서, SCM 운영현황
품질 관련	불량개선 세부 분석자료, QC 공정도

□ 일반 자료

생산 관련	생산부품, 납품용기 규격, 부품 작업 효율,
개발 관련	당사 부품 개발보고서, 포장사양서, 부품 규격, 기술소개 자료, 당사 신규부품 개발진행 현황
구매 관련	당사 관련 부품의 월재고현황, 일반 견적서, 납품 실적, 자재공급 계획, 화학물질 신고서, 단종 및 불용재고 현황, 2차 업체 대금지불 현황 및 지원실적, 소모품 및 치공구 현황
품질 관련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 측정 데이터, 불량대책서, 공정품질 지표, 납품자재 수율, 국제표준 인증현황, 출하검사 성적서, 변경점 신고서, 계측기 관리현황, 환경 승인자료(제품환경 보증서 등), 원자재 불량검사 현황

20.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수급사업자 공지 의무 추가

【현 황】

- 현행법 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심사지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자료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지하지 않으면 기술자료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자료에도 “대외비” 등 기술자료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음

【개선방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임을 표기하거나 원사업자에게 사전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심사지침에 명기

21.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중규제 완화

【현 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2011년 3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최대 3배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최초 도입되었고, 2013년 11월 부당한 가격결정,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까지 확대 적용되었음(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기술유용행위 금지(법 제12조3의 제3항)에 국한하여 적용(2011.3.29. 개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법 제8조 제1항), 부당반품금지(법 제10조), 감액금지(법제11조 제1항,제2항)에 확대 적용(2013.5.28.개정)
-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수준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기술유용행위 등 上記 5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법 제25의3, 제1항 제3호), 벌금 2배 부과(법 제30조 제1항 제1호)등 행정제재 및 형벌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3배 손해배상까지 지우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
-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책임도 원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실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의미로 추가 배상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제재
-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과잉규제로 업계 부담이 과중하고 당사자간의 자율합의에 의한 결정보다 법적 강제규정의 양산으로 인해 건설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킴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수준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어,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私人間 소송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상 私的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개선방안】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시 벌금/과징금에 대한 적용은 제외토록 함
-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도 실제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게 전환 필요
 - ※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하도급법의 다른 유형(부당특약금지 등 8개유형)에도 확대 적용해야 하고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확대 법안 발의가 논의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해할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고 수급사업자를 해할 목적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토록 함

<관련법안 : 하도급법 제35조 개정(안)>

현행	개정(案)
<p>*제35조(손해배상 책임)</p> <p>① (생략)</p> <p>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5조(손해배상 책임)</p> <p>① (좌동)</p> <p>② 원사업자가 <u>수급사업자를 해할 목적으로</u>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를 해할 목적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토록 함</u>)</p>

22 의무고발 요청제도 개선

【현 황】

- 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한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시행중에 있음(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요령)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불가피한 과거행위에 대해 사전에 불공정 행위를 조치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한 선의의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의무고발요청 건수가 증가하는 등 고발된 기업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수출 경쟁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회사 및 제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음

【개선방안】

- ① 해당기업이 충분히 소명하고 중소기업청 검토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내 공식적인 소명 절차 마련 필요
 - 의무고발 요청을 위한 중소기업청 내부절차에 따라 운영중이나, 해당기업의 소명 절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애로사항이 있음
- ② 현재 사회적인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 등에 따라 의무고발이 결정되고 있으나, 고의성이 아닌 사건이나, 사전에 피해기업 구제한 행위,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해당기업의 감경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

Ⅲ. 산업(R&D · 정보통신 · 에너지 등)

◀ 목 차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규모별 제약조건 합리성, 객관성 확보	87
2. 국책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운영기준 차별 폐지	91
3.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용자의 개별 동의의무 삭제	92
4.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 폐지	93
5.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정 완화	94
6. 가스공사 LNG 계약구조 개선	95
7.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정산조정계수 동일 적용	97
8. 전기시장 운영관련 규칙개정위원회 민간사 참여	99
9.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민간사업자) 확대 적용	100
10. LPG 수입업체와 생산업체 간 석유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101
1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비축의무 완화	103
1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일몰	105
13. 석유류와 전기 등 에너지원간 조세 형평성 제고	106
14. 수송용 에너지원(휘발유/경유와 CNG/LPG간) 간 세제 형평성 개선	108
15. 석유 중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110
16. 정유공정에 원료용 투입되는 석유류 중간제품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	112
17. 클린디젤버스/클린디젤하이브리드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면제	1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규모별 제약조건 합리성, 객관성 확보

【현 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비영리기관·학교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참여·수행·사후관리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차등 적용〔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제22조(기술료의 징수), 별표 1의 4(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기준),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76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기간)〕

- 주관기관 가능여부,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현금 부담률, 기술료 납부율 등
 - 개발후 기술료 상환(5년간) : 0%~40%(중소기업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40%)로 차별을 두어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
 - 정부출연금 지원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학교 등으로 구분하며, 50%~100%로 차등 지원
 - 대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차별이 있음에도 사업주관을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속성별 차등조건 현황〉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주관기업 가능 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대기업 주관 불가 사업 존재 (산업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다수)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지원) (총 연구개발비 대비)	75%	60%	50%(산업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기술료 징수 (정부출연금 대비)	10%	20%	40%
현금사업비 부담비율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 R&D사업 관리규정

- 2015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제3절 영리기관의 기술료 內 §9(정액 기술료의 징수율) 발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9조】

제6조 제1항에 따라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는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우수 중견/중소기업은 World Class 300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별도의 R&D 자금을 지원

○ 즉, 정부의 R&D 국고지원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은 2중 지원, 대기업은 2중 규제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대기업의 신사업 발굴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용, 협업에 제약요인

○ IT융합, 지능형자동차, IoT 등 미래사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고객사, 협력사 등 Value Chain 상 협업과정에 대기업의 주도력이 요구됨

○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대기업의 주관을 제한하여 참여와 시너지 효과 창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또한, 대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이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고, 현금부담율과 기술료 납부율은 중소·중견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내 ROI 및 과제수행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동기 생성 곤란

○ 이에 따라 대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데, 재무적 부담이 크게 발생

○ R&D 과제의 특성 상 연구 성과물이 단기간 내 사업화되기 어렵고, 사업화 되더라도 선도기술의 초기시장 미성숙으로 초기 매출 규모가 매우 작아 기업에 부담이 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 업체) 참여 제한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애로사례

- 2015년 산업 핵심 기술 개발사업(농기계 분야), 부품소재개발사업(그래핀 등) 국책과제 선정 공고 시 주관기관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여 대기업 참여 배제

- 2011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내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신시장 창출형과제 기준 시 중소기업 주관으로 명시됨
- 의무조항 및 평가 우대사항 :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의무사항 중견/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비율 50%이상 원칙, 및 정부출연금 활용비율 50% 원칙

□ 국가차원의 중요 기술개발 등 이유로 정부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시, 대기업은 낮은 정부출연금과 높은 기술료 상환으로 인해 정부지원 개발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80% 수준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상황

* 간접비 등 비용인정 부분에 있어서도 기관 유형별 차이

□ 최근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의 융합 및 동시 추진 추세 속에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 가중

□ 획일적인 기술료 책정으로 발전용 연료전지와 같이 상용화 및 산업화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에는 부담으로 작용

*발전용 연료전지는 시장형성시기, 시장규모 등이 불확실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가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상황

□ 대기업 주도의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기술료를 20%에서 40%로 인상하는 등 민간 부담 가중으로 기술발전 저해

【개선방안】

□ 업종 및 해당사업의 특성, 국가시책에 따라 대기업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로 차별없는 지원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규모에 의한 사업주관 제약조건 폐지, 정부출연금, 현금 부담, 기술료 납부기준의 객관성 확보(참여 비중과 의무의 동일기준 적용)

- 특히, 대기업의 국책연구과제 수행 시 기술료 부과율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기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

○ 국책과제 선정 시 정부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인 우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특히, 수출 유망산업의 경우)을 위해 기업간 공정경쟁을

제약하는 대기업 주관기관 참여배제를 풀어주는 것이 타당

○ 산업분야 또는 컨소시엄 형태, 과제 성격에 따라 대기업 주관의 국책과제 필요

- 예시) 트랙터 세계시장에서 한국메이커의 시장점유율은 2% 수준으로 해외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국제경쟁력 확보 시 제2의 자동차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큼

- 또한, 농기계 산업의 경우 주관기관을 완성차 대기업이 맡더라도 부품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업개발을 하게 되므로, 중소기업 동반 육성 효과가 크며, 동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필요

○ 선진국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R&D 집중형) 과제에 대한 기술료를 20% 수준으로 경감(대기업 기준)

*현행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10조(정액기술료의 징수율)에서 대기업의 기술료 징수율을 20%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징수료 기준 하향 조정

2. 국책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운영기준 차별 폐지

【현 황】

- 국책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운영 혜택이 중소기업에 편중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등은 현물로 산정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75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조 (직접비 산정) 제6항, 제8항]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대기업의 국책연구과제 수행 시 참여연구원 운영의 유연성 부족
- 대기업의 경우라도 기업 내 연구소는 중소기업이나 학교와 비슷한 규모의 팀 단위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외부 참여연구원이나 연구원 위촉 등이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유연성이 낮아 활용이 어려움
 -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대기업은 현물로만 산정 가능

【개선방안】

- 대기업의 자유로운 인력 활용 지원과 정부 R&D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책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운영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

3.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용자의 개별 동의의무 삭제

【현 황】

- 국내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 할 경우,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별도로 개별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정보통신망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해당법상 정보통신사업자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사업자가 포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해외 주요국의 경우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이용자의 개별동의를 받는 법령상 규정이 없음
-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신사업모델 등장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국내기업에게만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별도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로 볼 수 있음
- 오프라인 사업자(백화점, 정유사, 신용카드사 등)에게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규정
- 미국과 유럽간의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에 의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보장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가능
 - 이용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님

【개선방안】

- 이용자 동의의무 삭제
 - 고지의무 지속유지 및 자율적 보호조치 강화

4.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 폐지

【현 황】

-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강제적 섯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여가부장관은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심야시간 게임 접속 제한을 통한 게임중독 예방효과에는 근거가 없음
- 게임중독의 근본 원인이 가정 및 사회적 측면에 있음에도 게임에만 전가, 근본원인의 진단 필요
- 섯다운제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프리서버, 성인아이디 판매 등 규제 회피수단 존재에 따른 실효성 극히 미미
-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및 모바일게임과 인터넷게임의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양자간 차별
-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주관적이며 비합리적
- 섯다운제 관련 해외사례 없음
 - 미국, EU, 일본 등은 게임시간 제한 규제가 없으며, 민간단체나 업계 자율로 규제
※태국은 섯다운제 도입(2003.7) 후 2년 만에 PC방 시간제한으로 변경하여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평일/주말 각각 정해진 시간외 PC방 출입 제한
 - 베트남은 행정지도로 연령에 관계없이 오후10시~오전8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 제한. 다만, 이미 진행 중인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국은 ‘피로도 시스템’으로 게임 이용시간이 2~3시간 이상 될 경우 캐릭터의 경험치 및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 정부·기업·가정이 참여하는 자율규제로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보호자 감독 프로젝트’ 시행중

【개선방안】

- 게임 강제적 섯다운제 폐지

5.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정 완화

【현 황】

- 현행법 상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가능 하나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편의점 등)를 통해서는 가능(약사법 제44조의2 제2항)
-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약사법 내 정의)으로 현재는 타이레놀, 부루펜, 웨스탈 등 1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온라인 또한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업계 대표 발언(제4차 KITA 서비스산업 CEO 포럼(4/1))

“마지막으로 해외사이트에서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약품이나 식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까지도 온라인에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팔고 있는 상품인데 굳이 해외온라인에서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약품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규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감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해외 사례 : 독일) 유럽 대법원의 판결* 이후 2004년 1월 1일부터 독일 내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
- “약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금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과실이나 오용의 가능성이 높아 금지될 수 있으나,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동 원칙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선방안】

- 약사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온라인 판매업체도 가능토록 개정

6. 가스공사 LNG 계약구조 개선

【현 황】

□ LNG발전사업자는 가스공사에서 LNG를 공급받고 있음(전기사업법)

*LNG 발전사업자: 한전자회사 및 민간발전사로 구성

○ 일부 LNG 발전사업자는 직접 LNG를 도입해서 사용

□ 발전사업자는 가스공사와 약정한 LNG 물량을 과소 또는 과대 사용 시, 페널티를 부과 받음(Take or Pay 조항; TOP)

□ 전기사업법에 따라 LNG 발전사업자는 생산가능한 최대 전력공급의무가 있음
→ TOP 면제를 위한 발전량 조절이 불가능

【예로사례 및 개선사유】

□ TOP 적용의 경직성

○ LNG 발전사업자는 발전량 조절이 법적으로 불가능

○ 즉, LNG 사용량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 수요급증에 따라 LNG 발전기를 예상보다 초과 가동 시 LNG 초과 사용이 불가피
→ TOP 부과

○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한 결과가 TOP부과로 귀결되는 것은 불합리

□ TOP 면제를 위한 LNG 사용량 변경권 제한

○ LNG 사용량 변경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가스공사의 권한

○ 한전자회사의 경우는 ‘LNG 수급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가스공사가 변경 거부 가능 → 차별적 조항

□ TOP 적용기준의 차별성

- (민간)LNG 발전사업자는 개별발전기의 사용량 기준으로 $\pm 10\%$ TOP 적용
- 반면, 한전자회사는 전체발전기 총량기준으로 $\pm 10\%$ TOP 적용
- 직도입에 따른 계약해지 조건의 차별성
 - (민간)LNG 발전사업자는 직도입시 패널티 부과
 - 한전자회사는 직도입시 패널티 없음

【개선방안】

- 한전자회사와 동일한 계약 조건 적용 또는 전기사업법상 제한조건을 반영한 합리적 조항으로 변경

<예시>

- TOP 적용기준 : 발전회사의 LNG 초과 사용으로 인해 가스공사가 TOP 부과 시에만 발전회사 TOP 부과
- 합리적 해지 조건 도출 → 직도입 확실화

7.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정산조정계수 동일 적용

【현 황】

- 동일한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발전사와 발전공기업이 서로 상이한 제도를 적용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장 제1절(발전비용 평가절차) 및 제2절(비용평가위원회), 한국 전력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 민간발전사 : 전력도매가격을 계통한계가격⁴⁾으로 정산받음으로써 변동성이 높은 전력현물시장에 100% 노출
- 발전공기업 : 전력시장가격에 정산조정계수⁵⁾를 적용하여 정산받음으로써 적정 투자보수율을 보장받고 있음
- ☞ 정산조정계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⁶⁾이 민간발전사와 발전 공기업 간의 차별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정산조정계수 제도 도입 취지의 변질
- 정산조정계수는 그 불규칙성과 큰 변동폭으로 인해 도입 이래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고, 정부가 정산조정계수의 적용기준을 ‘발전원별’에서 ‘발전사업자별’로 변경⁷⁾하면서 문제점이 더욱 크게 부각
- 당초 정산조정계수는 전원별 발전차익의 일정 부분만 정산지급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재무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저유가 상황 지속과 전력 수요 감소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수익이 감소하자 정부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이를 보전해 주고 있음

4) 계통한계가격 (SMP : System Marginal Price) : 거래시간별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으로서, 전력생산에 참여한 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가격으로 결정

5) 2008년 5월, 원자력, 석탄, LNG 등 전원별 발전차익의 일정 부분만 정산지급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재무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6)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10조 별표 23

7) 2015년 5월, 비용평가규정 개정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전원별 계수 → 발전사별 계수)

□ 민간발전사와 발전공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

- 지난 해 발전공기업은 5개사 모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민간 LNG발전사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경영악화 지속
- 발전공기업들은 최소한의 투자보수율 보장⁸⁾은 물론, 더 나아가 시장신호와 미래 투자에 대한 Risk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발전사들은 변동성이 높은 전력현물시장에 100% 노출되어 있어, 신규 사업 추진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음

구분	발전공기업 5개사		민간 LNG발전사	
	2015년	2016년 1Q	2015년	2016년 1Q
영업이익률	12.5%	26.9%	5.4%	-
순이익률	8.3%	20.2%	0.4%	-

* 민간발전사업자의 2016년 1Q 실적은 집계 중 (전력수급 악화로 전년 대비 적자폭 확대)

□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위배

- 정산조정계수가 발전공기업에게만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것은 민간발전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일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의 경쟁 촉진’이라는 「전기사업법」 제1조의 목적에도 위배

【개선방안】

- 정산조정계수는 민간발전사와 발전공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에 따른 차별적 규제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저원가발전원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승인차액계약⁹⁾을 적용
- 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므로 총괄원가주의를 적용하고, 변동성이 높은 전력현물시장이 아닌, 해외 선진국들처럼 발전사와 전력판매사업자(한전)간의 자발적 계약이 중심이 되도록 전력시장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8) 2014~2015년, 발전공기업 중 LNG발전의 상대적 비중이 가장 높은 남부발전의 당기순손실 발생을 우려, 다른 발전사보다 높은 수준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준 바 있음

9) 정부승인차액계약(VC : Vesting Contract) : 2014년 5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이 2만KW를 초과하는 저원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한전과의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도록 규정

8. 전기시장 운영관련 규칙개정위원회 민간사 참여

【현 황】

- 현행 전력시장은 전기사업법 제36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전기사업법 제36조,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2.1조)
-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변경사항은 同 규칙상 ‘규칙개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현재 ‘규개위’는 전력거래소/각계 전문가/사업자 대표로 구성
- 이 중 사업자 대표로 한전(판매사업자)과 한전자회사(발전사업자)로만 구성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규개위의 규칙개정 기능은 사업자들에게 영향이 크고 중요
 - 사업자 대표는 다양성을 보장하여 규칙 제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해야 함
 - 그러나, 현재 판매사업자/발전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대표는 발전사 대표로 한전자회사만 있음
- ∴ 非 한전자회사 그룹 발전사업자 필요

【개선방안】

- 사업자 대표 중 발전사업자 대표에 ‘非 한전자회사’ 대표의 참여 보장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9.2.1조(설치 및 구성)</p> <p>① (생략)</p> <p>② 규칙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은 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력거래소이사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p> <p>3. <u>전력거래소 회원을 대표하는 회원 소속의 임직원</u></p>	<p>*제9.2.1조(설치 및 구성)</p> <p>① (좌동)</p> <p>②.....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p> <p>③</p> <p>.....</p> <p>3. <u>전력거래소 회원 중 각 호 회원 소속의 임직원</u></p> <p>가. 판매사업자</p> <p>나. 발전사업자 중 한전자회사</p> <p>다. 가, 나 목이 아닌 회원</p>

9.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민간사업자) 확대 적용

【현 황】

- 현행법 상 토양오염이 확인되더라도 위해성평가를 통해 복원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음(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위해성평가)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오염의 심각도가 낮고, 확산의 우려가 없으며,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2년 안에 의무적으로 정화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 또한 민간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복원 시 발생하는 비용이 과다하여 사업장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

【개선방안】

- 위해성평가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명문화함으로써 복원방법 및 복원기간에 대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기대효과

- 토양오염복원공사 투자 효율성 증대

10. LPG 수입업체와 생산업체 간 석유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현 황】

- 현행법 상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대상으로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 유종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을 규정하였으나, 프로판 및 부탄 등 LPG는 제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제1,3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3)
- 이 결과, LPG수입업체가 수입하는 LPG에는 부과금(16원/L)이 면제되는 반면, 석유정제업자가 원유로부터 생산하는 국내 생산LPG에는 부과금이 포함되어 국내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차별규제로 작용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국내 LPG시장은 LPG수입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LPG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에게는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면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체에게는 정당한 사유없이 리터당 16원의 부과금을 부과하여 국내 정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킴
- 조세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면 되지 아니한다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 국내 생산LPG에 부과금 환급시 정유업계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수입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입물량을 통하여 공급량 조절이 가능한 수입사에게 석유수입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당혜택으로 비판될 가능성이 있음

【개선방안】

- 국내 생산LPG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또는 수입LPG에 대한 수입부과금 징수
 - 시행령 개정 통한 생산LPG 환급조항 신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

기대효과

- 동일 용도의 동일 제품에 동일 세율을 부과한다는 조세형평성원칙을 지킬 수 있으며, 수입품에 대한 국내 생산품의 조세공과금역차별 해소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경쟁력을 개선

1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비축의무 완화

【현 황】

□ 석유정제업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의 40일분의 석유를 비축해야 하며, 이중 28일분은 석유수입부과금 납부의무도 있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 석유정제업자의 석유비축의무량 중 12일분은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

<석유사업자별 비축의무 및 부과금 면제 비축량>

구 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외)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비축의무	연간내수판매량의 40일분	면제	연간내수판매량의 30일분
부과금면제비축량	연간내수판매량의 12일분	-	-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의무비축량에 조세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

○ 에너지안보와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의 비축의무 이외에도 비축의무량의 70%인 28일분은 석유수입부과금 납부의무가 있어 이중부담으로 작용

□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를 제외하고는 석유정제업자에게만 비축의무가 있어 1차 석유공급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석유비축의무는 공적인 목적(에너지안보)을 위한 제도임에도 특정 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석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하는 결과 초래

【개선방안】

□ 석유정제업자의 비축의무량중 원유 수입에서 석유제품 생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약

10일)에 해당하는 양을 제외한 것은 석유수입부과금 납부의무에서 제외

<석유정제업자의 비축의무와 부과금면제비축량>

구 분	현행	개정(안)
비축의무	연간내수판매량의 40일분	연간내수판매량의 40일분
부과금면제비축량	연간내수판매량의 12일분	연간내수판매량의 30일분
운영재고량	연간내수판매량의 28일분	연간내수판매량의 10일분

기대효과

- 석유비축의무량중 부과금 면제 비축량 비중 확대로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수입부과금 부담액 감소 (약 300억 원)

1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일몰

【현 황】

- 전자상거래 거래 대리점/주유소와 오프라인거래 대리점/주유소 간 차별
 -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차별적인 조세부담으로 자율경쟁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훼손
 - 석유사업자의 판매수단에 따라 조세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적 조세정책으로 자율경쟁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
 - － 전자상거래시에만 부과금을 환급하고, 장외시장(오프라인) 거래는 부과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
- 지속적인 조세 부담 차별화는 전자상거래시장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세금 지원에 의존적인 시장으로 전락
 - ※ 전자상거래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원/1) 추이 : 16(2012.7~2014.6) → 8(2014.7~2015.6) → 8~4(2015.7~2016.6)

【개선방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2016년 6월말로 일몰
 - 자생적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하는 현행제도는 금년 6월말로 일몰 필요

기대효과

- 자율경쟁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재정수입 증대, 환급업무 축소에 따른 피규제자와 관리당국(석유관리원)의 행정비용 절감

13. 석유류와 전기 등 에너지원간 조세 형평성 제고

【현 황】

- 현행법 상의 에너지 조세체계는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전력가격이 등유가격보다 저렴하여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개별소비세법 제1조4,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 또한 석유에 지나치게 과세가 집중되어 있고, 석탄/원자력/전력에 상대적으로 미흡.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의 왜곡심화로 유류·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급격히 대체되어 전력수요 급증
 - 이 결과, 에너지 추가손실 40~50%, 약 1조 원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유류와 비유류(전력 등)에 대한 차등적인 세금 적용으로 에너지 믹스 왜곡
 - 전력의 경우, 전력산업기금 납부액 적용 이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부과
 - 1차 에너지에 비해 2차 에너지인 전력은 낮은 효율과 발전과정 중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적비용 및 외부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함
 - 2014.7.1이후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으나, 원자력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음
- 현행 비합리적인 세율체계로 인하여 유류소비가 전력소비로 대체되는 전환수요가 여전히 지속

【개선방안】

- 국가 에너지 믹스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유류 對 비유류간 에너지세제의 균형적 재조정
 - 원자력, 석탄, 가스 등의 상대세율을 높이고 유류의 상대세율을 낮춰 조세 형평성을 개선

- 1차/2차 에너지가격 역전상황,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안전문제, 국제추세 등을 반영하여 에너지세제의 균형적 재조정이 필요
- 세수중립의 원칙, 물가안정의 원칙, 소득 계층별 형평성 원칙, 합리적 에너지믹스 달성의 원칙을 토대로 진행해야 함

〈[참고] 에너지세제 현황 및 구조〉

		휘발유	경유	LPG		LNG	등유	중유	유연탄	전력	에너지 관련 회계/기금
				부탄	프로판						
		(원/ℓ)	(원/ℓ)	(원/kg)		(원/kg)	(원/ℓ)	(원/ℓ)	(원/kg)	(원/kwh)	
관세	기본	3%	3%	3%	3%	3%	3%	3%	무세	-	
	할당	3%	3%	2%	2%	3%	3%	3%	무세	-	
개별소비세	기본	-	-	252	20	60	90	17	24	-	
	탄력	-	-	275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	475	340	-	-	-	-	-	-	-	교특(80%), 환특(15%), 예특(3%), 균특(2%)
	탄력	529	375	-	-	-	-	-	-	-	
교육세		79	56	41	-	-	14	3	-	-	
지방주행세		138	98	-	-	-	-	-	-	-	
부가가치세		10%									
수입부과금		16	16	-	-	24.242	16	16	-	-	예특
판매부과금		36(고급)	-	62.283	-	-	-	-	-	-	
안전관리부담금		-	-	4.5	4.5	3.9/m ³	-	-	-	-	
품질검사수수료		0.469	0.469	0.469/kg	0.469/kg	-	0.469	0.469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	-	-	-	-	-	3.7%	전산기금

원자료: 김승래 (2012), 『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 이후 에너지세제 구조조정 방향 및 과제』, 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의 4쪽 <표>(2011년 1월 기준)를 기준으로 2014년 4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관세청 (관세율)/법제처 (기타 사항) /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14. 수송용 에너지원(휘발유/경유와 CNG/LPG간) 간 세제 형평성 개선

【현 황】

- 수송용 에너지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의 항목으로 부과(개별소비세법 제1조4,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서는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 비율을 100:85:50으로 설정 [사회적 비용(환경오염비용, 교통혼잡비용, 안보비용) 등을 산정해서 작성]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휘발유, 경유에는 조세 부담이 과중하고 가스(CNG, LPG 등)는 난방용 연료에 부과되는 낮은 수준의 세금만 부과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조세부담이 거의 없음
- 복잡하게 운영되는 에너지 조세체제로 사회적 비용이 경제활동에 내재화되는 과정이 불분명
 - 높은 유류세로 가계 부담(이중과세)
 - 수송용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비용(환경오염비용, 교통혼잡비용, 안보비용)은 환경오염비용으로 국한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
 - 교통혼잡비용은 혼잡이 없는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에도 부담시키는 것으로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
 - 안보비용은 에너지 열량에 따라 부과하였으나 과세근거나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의 세율체계는 유종간 상대가격 격차에 따라 소비대체 및 그에 따른 유류세의 감소로 재정부담이 급증
 - 클린디젤기술의 개발, 유로6의 도입, 친환경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으로 인한 경유에 대한 환경비용의 변화(매연여과장치(DPF)로 미세먼지 90%이상,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로 질소산화물 85% 감소), 휘발유차의 기술발전 등 미반영

-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에 대한 과세방안을 만들어 수송용 에너지 세제에 편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개선방안】

- 휘발유, 경유의 상대세액을 낮추고 LPG와 CNG의 상대세율을 높여 수송용 연료의 유종간 조세 형평성을 개선해야 하며,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송용 전기차에 대한 과세 방안도 검토 필요
- 수송용 에너지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량에 오염물질 피해비용을 적용하여 환경비용 산정 필요

구분	휘발유(원/1)	경유(원/1)	LPG(원/1)	CNG(원/㎡)
현행 세액	746	529	185	48
(상대비용)	(100)	(71)	(25)	(6)
사회적 비용	578	305	216	282
(상대비용)	(100)	(53)	(37)	(49)
상대비용 증감	-	-18	8	42

[국회미래에너지연구회·시장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에너지가격구조 합리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中]

15. 석유 중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현 황】

-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석유류가 국가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면세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개별소비세법 제18조)
 - 특정용도 사용 대상으로 의료용, 의약품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 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한편, 원유수입 다변화 및 석유정제기술의 발달로 석유중간제품을 수입하여 정제 공장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량이 증가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2014년 7.21일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의 범위중 석유중간제품을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 및 유분’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물품을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석유중간제품을 구매·수입하여 정제 원료용으로 투입시 결국 원료에 과세됨으로써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하여야 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됨
 - 또한, 이 경우 휘발유 및 등·경유 등 과세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물량은 공제·환급이 가능하나, 나프타·제트유 등 내수용 비과세 제품제조에 소요된 물량은 공제·환급이 불가능해짐
- 정유업계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제마진은 유가 변동과의 상관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정유사의 마진 예측, 리스크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제마진 악화시 리스크 헷지 및 안정적인 가동율 유지를 위해 석유중간제품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으나, 내수용 비과세 제품제조에 소요된 물량의 환급이 곤란하여 합리적 경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차질 발생

□ 이는 결과적으로 석유제품의 원가 및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맞게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석유중간제품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릴 필요 있음

현행	개정(안)
<p>*개별소비세법 제18조</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p> <p>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u>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u>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p>	<p>*개별소비세법 제18조</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p> <p>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u>농약 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정유공정용</u>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p>

기대효과

- 정제마진 약화시에도 석유정제업자의 안정적인 가동을 유지 가능으로 석유제품 수출증대에 기여
- 석유제품의 원가 및 가격 경쟁력 제고하고, 제세금 미환급 리스크가 해소하며 환급물량 산정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국민의 부담 경감, 원유에만 의존된 정유산업의 원료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원유수급 차질 및 가격 급등락시 석유안보에 기여

16. 정유공정에 원료용 투입되는 석유류 중간제품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현 황】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석유류가 의료용, 의약품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조건 하에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음
- 그러나 석유류를 정유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조건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정제기술 발달로 원료다변화를 지속 추진 중인 정유업계에 규제로 작용(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1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국제유가 급변으로 경영환경 리스크가 커진 정제업자들은 2014년부터 정제마진이 악화되는 시기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원유 대신, 중유 성상의 석유중간제품을 수입/구매하여 공정에 투입함으로써 생산량을 유지하는 기법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
- 특히,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국내 정유산업은 운임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원료 수급의 탄력성을 확보해야만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도가 필수적임
- 석유중간제품의 투입은 정제마진 악화 시점에 리스크를 헷지하는 수단이 되며, 안정적인 수출규모를 유지하는 데 기여함

구 분	싱가폴 단순정제마진 (\$/B)	실제 CDU 가동률 (%)	중간제품 미 투입시 CDU 가동률 (%)	중간제품의 가동률 기여분 (%)
2014년	△1.98	85.9	80.5	5.4
2015년	0.62	89.0	87.3	1.7

- 주) 1. 단순정제마진은 싱가포르 두바이유 기준으로 IEA Oil Market Report 자료임
 2. 해당기간 석유중간제품을 CDU에 투입한 실적이 있는 A사의 CDU 가동률과 중간제품 미 투입시의 가동률을 비교 산정

- 중유 성상 석유중간제품을 공정에 투입하면 연산품 특성상 필수적으로 비과세제품(납사, 아스팔트, 항공유 등)이 생산되는데, 석유중간제품 수입/구매 시 선납한 개별소비세 중 내수용 비과세제품 생산에 기여한 부분(약 20~30%) 만큼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개선방안】

-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정유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석유류 중간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되도록 개별소비세법 개정
- 이는 중유 성상 중간제품을 수입/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조건부로 면세 적용하고,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정제업자가 반출하는 단계에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정유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님

현행	개정(안)
① 및 1-9호 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① 및 1-9호 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u>정유공정용</u>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7. 클린디젤버스/클린디젤하이브리드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면제

【현 황】

- 「대기환경보전법」의 저공해자동차 지원조항(제58조)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 구매에 대한 직접보조금, 부가가치세, 취득세 면제를 통해 약 3,000만원/대 지원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부가가치세(10%), 취득세(2%), 직접보조금(1,850만원)
 -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면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인증현황 자료(2014.10.20)에 따르면 전기, 천연가스 외에도 DPF를 부착한 경유버스도 포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최근의 기술발전(유로6) 등으로 클린디젤버스/클린디젤하이브리드버스의 환경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천연가스 버스와 동등한 수준
 -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음

구 분		CO	NOx	NMHC	CH4	PM	PN(#/kWh)	시험모드
디젤	유로5	4.0	2.0	0.55		0.03		ETC
	유로6	4.0	0.46	0.16		0.01	6×10^{11}	WHTC
CNG	유로5	4.0	2.0	0.55	-	-		ETC
	유로6	4.0	0.4	0.14		-		WHTC

[14년, 한국기계연구원, 배출가스 규제기준(단위: g/kWh)]

- ※ 국내의 경우 천연가스 규제에서는 CH4(실제 배출치 0.5g/kWh), PM이 제외되어 있음
디젤의 경우, PM뿐만 아니라 PN(입자 개수)규제까지 포함되어 있음
- ※ 경유차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유로6) 적용 등을 감안하여 천연가스 버스 구입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 검토('13.2.19, 기재부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를 천연가스 자동차 외에도 클린디젤, 전기자동차 등으로 하고 있음

○ 환경비용 비교 연구에서도 클린디젤버스/디젤하이브리드버스는 천연가스와 동등수준

구분	NIER-6 mode(국립환경과학원)			Katech-G mode(자동차부품연구원)		
	디젤	CNG	D-HEV	디젤	CNG	D-HEV
환경비용(B)	1.60	1.298	1.382	1.811	1.578	1.436

[2012, 흥영표의원 정책자료집 참고]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환경성이 개선된 클린디젤버스/클린디젤하이브리드 버스를 포함

현행	개정(안)
<p>*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아래 생략)</p> <p>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u>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u></p>	<p>현재 친환경차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면제혜택이 천연가스 버스에만 국한되어 지원중</p> <p><u>환경성이 개선된 클린디젤버스/클린디젤하이브리드 버스를 부가세 및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적용</u></p>
<p>*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p> <p>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p> <p>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u>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u></p>	

기대효과

- 클린디젤버스/클린디젤하이브리드 구매에 따른 조세부담 형평성 개선

IV. 토지이용 · 수도권

◀ 목 차 ▶

1.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완화	119
2.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공장용도변경 제한 완화	123
3.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세로 전환	124
4.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분양 요건 완화	127
5. 선분양한 산업단지의 세제혜택 기간 조정	130
6. 민간 사업시행자의 건축사업 규제 완화	131
7. 경제자유구역 입주‘국내기업의 역차별’해소	133
8.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해외 U턴 기업의 세제 지원	136
9. 기업도시 일부 준공 제한 완화	139
10.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 연장	141
11. 기업도시에 대한 재정, 기반시설 명시화	142
12.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보유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143
13. 기업도시내 관광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절차 마련	146
14. 기업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147

1.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완화

【현 황】

-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는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의 제조업 과도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공장총량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500㎡이상의 공장에 적용(수도권 정비계획법 §18, 동법 시행령 제22조, 공장총량제운영지침)
-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내 공장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 허용량을 결정
-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 공장총량제 운영지침(2009.2.25)
 - 국토교통부 고시 2012-104호에 의거한 2012~2014년 경기도 총량은 4,500㎡이며, 2015~2017년 총량은 아직 未발표 상태(경기도내 공장 연면적 총합을 허용량 이하로 관리)
- 공장신설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수도권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지정가능
-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장총량규제를 적용, 정해진 물량 내에서만 건축 가능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수도권 내 공장에 대한 총량제로 인해 투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제약과 관련부처의 협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적시투자 결정을 저해
- 결국, 공장투자의 제약에 따라 국내보다는 해외공장(중국, 브라질 등) 투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과밀화 방지라는 본래의 규제목적이 국내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공장총량제가 지역별로 할당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공장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군포시(유한양행, LS산전 등 약 15만평 공장부지 미활용상태), 안양시 등 지자체별 미사용 공장물량 장기보유(3~4년 이상)중으로 강제 의무반납제도가 없어 의왕시 등 공장물량이 전혀 없어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자체의 경우 신규 공장건립 자체가 불가능

□ 사업자의 직업수행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

- 헌법재판소는 공장총량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나, 공장총량제는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등을 하려는 국민도 총허용량의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공장의 신설 등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공장총량의 설정량 및 집행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의 예측성이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고, 가사 총량이 모두 소진되어 당해 연도에는 공장의 신설등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새로이 배정되는 총허용량의 범위 내에서 공장 신설등을 할 수 있어 그 시기가 일시 연기되는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그 공장의 신설등을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공장총량제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11.29, 2000헌바78)

* 공장설립은 사업자의 사업전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하고자 할 때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면 이후 공장을 설립하여도 예상하는 수익을 거둘 수 없음

□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공장 건축 시에도 추가 총량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중복 규제사항이 발생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공업지역 : 주거지역과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지정 → 오염,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업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업지역을 지정한 것이므로, 공업지역내 공장건축에까지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해당 내용은 공업지역 이외의 개별입지 공장비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권역별 입지규제 외에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중복 적용

- 수도권계획정비법에서 공장총량제, 공업용지 공급물량 제한, 공업지역 지정,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규제 등으로 총량 관리하며,

- 산업집적법에서 권역별로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업종(첨단/일반), 입지유형(산업단지/개별입지)에 따라 차등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입지 규제현황>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총량제	·서울·인천·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면적을 정해 그 범위안에서 공장 신·증설 및 용도변경을 허가(연면적 500㎡이상의 공장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 및 개별입지가 적용대상		
공업용지 공급물량제한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제조업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2014.4 현재, 18.9%). 다만, 기존 개별입지 공장 집산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시 산업단지 공급물량 30%내에서 추가 공급		
공업지역 지정	·위치변경만 허용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 범위내)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 허용	-
공업용지 조성사업	-	·30만㎡이상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후 허용	·3만㎡~6만㎡이하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후 허용

【개선방안】

-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허용총량 확대
- 공장규모가 증가되지 않는 공장분리 시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적용 제외
-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현행	개정(안)
<p>*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p> <p>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삭 제)</p>

□ 공업지역내 공장건축은 공장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

* 국토계획 및 이용법에 따른 공업생산 능률성 제고 및 편익을 증진하는 용도지역

※ 현재 산업단지내 공장은 공장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입지법 등에 따른 지식산업·유통 등 시설 및 종사자·이용자를 위한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개발되는 토지

<공장총량 운영지침 개정(안)>

현행	개정(案)
<p>[공장총량 운영지침]</p> <p>3. 공장총량 적용대상</p> <p>3-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p> <p>4)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공장건축</p>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p> <p>나)그 밖의 관계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공장총량 운영지침]</p> <p>3. 공장총량 적용대상</p> <p>3-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p> <p>4)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공장건축</p>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p> <p>나)그 밖의 관계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업지역</p>

기대효과

- 수도권 공장에 대한 투자제약이 완화될 경우, 수요 증가시 해외가 아닌 국내 공장 신설·증설로 투자창출 효과, 고용창출 효과 발생으로 내수 활성화가 가능
- 또한 생산 제품의 과반수가 해외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증대 효과 발생하며, 가치사슬로 연결된 중소기업들에 대한 파급효과(투자,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도 함께 나타남

2.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공장용도변경 제한 완화

【현 황】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공장용도 변경 제한(산업집적법 제20조 제1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정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공장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
 - － 공장신설에는 기존 건축물 용도를 공장용으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연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제조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공장신축에 비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적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특히, 용도변경 후 제조시설 설치는 공장증설에 비해 환경오염, 건폐율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공장신축으로 분류되어 규제강도가 훨씬 높음
- 기업입장에서는 시설 활용도가 낮아져서 재산상의 손실 발생

【개선방안】

- 3천㎡ 이내의 용도변경 및 제조시설의 설치 허용
 - 산업집적법 상 변경 제한면적을 3천㎡ 이하로 확대
 - 규제완화특별법에서는 용도변경 및 제조시설 설치를 특례대상에 삼입하고 특례대상을 대기업에까지 확대

3.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세로 전환

【현 황】

□ 개발부담금 납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5, 동법 시행령 §4 ① 별표1)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

※개발부담금=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부담률20%(또는 25%)

□ 개발부담금 감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 ①~③)

- 면제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택지 개발사업 등

- 50% 감경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 다만, 민간개발은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수도권 지역은 개발부담금 50% 감경,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

□ 개발부담금 귀속 및 징수금액(개발이익환수법 §4 ①)

-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 나머지 50%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동일한 세원에 대해 개발부담금과 양도세 등 여러 세금이 중복 부과

- 건축물, 토지 등의 가치증가분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고, 매각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면 양도세가 부과

－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소득세로서 부담목적이 동일하여 원칙적으로 중복되어 이중과세에 해당

－ 토지 보유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여 부담 가중

- 하나의 토지개발·이용행위에 대해 개발-보유-매각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준조세

(개발부담금)와 조세(양도세 등)를 중복 부과

-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지방세법 §7 ④) 부담
- 개발부담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사업초기의 기업부담을 증가시켜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고, 조성원가 상승 요인이 되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
 -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원가에 전가, 결국 조성원가 및 분양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 위배소지 등 위헌소지
 - 개발이익은 단지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가치증가로, 개발이익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개발부담금은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부과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음
 - 헌법재판소도 舊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유로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개시시점지가가 될 수 있는 매입가액의 범위를 시행령에 의하여 한정적·열거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0 ③ 단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상회하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그 객관적 진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여 적정하고 현실적인 개발이익을 계측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가공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원본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 등에게 과도한 금전납부의무를 과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인 재산권의 제한 시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헌재 1998.06.25, 95헌바35

- 단일의 고세율 부과로 원본잠식의 우려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배
 - 단일의 고세율로 하는 경우 가공이득에 대한 부담이 되어 소득세로서의 본질에 어긋나는 원본잠식의 우려가 있음
 - 소득 수준이 다른 부담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 소지
- 공공과 민간을 차별하는 등 공공만 부담금을 감면하여 평등원칙에 위반
 -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동일

한 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면 부담금을 부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세권 개발 등은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사업이지만 부담금 부과 면제 및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은 민간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므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도 민간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 시행령에 주요사항을 포괄위임하여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

※법률이 하위법령에 입법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와 토지의 면적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

【개선방안】

□ 1안) 개발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

- 개발부담금은 현행 조세제도와 중복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사업초기 자금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토지 개발자가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양도)에 현행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

□ 2안) 투기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현행 부담금을 유지하되, 사업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등 특정한 요건 충족 시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실제 이익이 실현되는 양도시점까지 유예하거나,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야 함

현행	개정(안)
<신설>	§7의2(부과유예)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등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까지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다.

4.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분양 요건 완화

【현 황】

-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공공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권 30%만 확보되면 분양이 가능하나,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권 확보’, ‘용지조성공사 착공’, ‘선분양 보증’ 요건이 필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선분양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액 환부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보증서 등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다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선수금)】

-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4.7.14, 2014.12.16, 2016.2.11.)
- 1.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 2.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가.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 (2)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 나.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 (1)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기업대출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 (2)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선분양 보증’ 요건을 통해 수분양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함에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많은 상황

○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분양요건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 애로 가중

*사례 :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사업 인허가를 완료해 놓고도 금융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는 등 매물비용 발생

□ 민간 산업단지에 대한 차별규제로 민간 산업단지 개발 및 투자 활성화 저해

○ 특히, ‘선분양 보증’ 은 분양이 잘 될수록 사업이 안정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는 반대로 높아지는 모순이 있으며 이는 결국 산업용지의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입주기업에게도 부담이 됨

○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를 차별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참여 저해

— 총 사업비 2,000억 원, 선수금 1,600억 원, 유상면적 100만㎡인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보증·보험 수수료로 약 48억 원 지불 필요

*전제조건 : 약정이자율(년 1%), 보증기간(3년)

*보증보험 수수료 : 48억 원(1,600억 원×1%×3년)

□ 분양여부를 불문하고 선수금 계획금액 전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

○ 수분양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수분양자가 납부한 선수금만을 보증하는 것이 타당

【개선방안】

□ 선분양 보증이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이행에 대한 안정장치가 목적이라면, 민간 사업시행자의 일정요건 충족(예시 : 자본금 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서(예시 : 도급순위 100위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소유권 확보’ 선분양 요건에서 삭제하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검증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을 면제 또는 보증 받는 선수금 범위 명확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선수금) 다. 수분양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중 략〉...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p> <p>(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중 략〉...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p> <p>(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중 략〉...준공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할 것. 〈이하 생략〉</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선수금) 다. (현행과 같음)</p> <p>(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한 선수금 그 금액에 대한...〈중 략〉...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p> <p>(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한 선수금을 ...〈중 략〉...준공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할 것. 〈이하 생략〉</p>

5. 선분양한 산업단지의 세제혜택 기간 조정

【현 황】

- 대부분 산업단지들이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선분양하고 있으며, 선분양한 산업단지는 단지조성 공사기간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감면기간내 공장건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즉,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건축할 시점에는 투자를 결정한 시점(토지분양 계약 체결시점)의 세제혜택들이 일몰기간 경과하여 그 혜택을 얻기 어려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선분양한 산업단지는 투자시점에 예측한 세제혜택과 공장 건축시 세제혜택이 상이하게 되어 입주기업들이 사업비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만약 세제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입주기업의 예상하지 못한 비용부담이 가중되게 됨
- 동법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에는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 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12.31까지는 종전의 법률에 따라 세제혜택을 부과하여 분양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사례가 있음
- ※ 2015.5.31까지 분양계약한 업체는 2017.12.31까지 취득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만, 2016.1.10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그 보다 짧은 2016.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이 있음

【개선방안】

- 선분양한 산업단지는 세제혜택 기간을 조성공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적용 필요
- 예시) 2016.12.31까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12.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6. 민간 사업시행자의 건축사업 규제 완화

【현 황】

-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관합동법인만 개발 가능하며, 민간 사업시행자 단독으로 개발 불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항, 제16조 제1항)
-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는 건축사업을 2011년 8월 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법률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

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14.5.9>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14.5.9.>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사업 규제는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유인과 산업단지개발 활성화를 저해

【개선방안】

-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민간 사업자도 건축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7.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

【현 황】

- 국내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 유치를 통해 영업기반 마련과 개발 활성화가 필수이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입주혜택이 외투기업에만 국한되어,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에는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 밖에 위치하므로 국내기업이 입주할 경우, 지방이전으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경자유역 입주에 따른 혜택은 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해 있어 국내기업 이전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의 법적 근거가 없음
 - 전국의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은 수도권 외 지역에 입지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보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토지가격이 저렴한 산업단지와 조세감면 인센티브가 있는 기업도시 등과 비해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 입주 유인은 매우 미약
 - 산업단지*, 혁신도시, R&D특구, 기업도시(근거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보다 열위

*기업도시 :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신설 또는 이전 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3년간 100% + 2년간 50%), 지방세 감면은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제정가능

**산업단지 : 국세(감면 없음), 지방세(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감면)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전국의 8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인 차별을 해소하여 경제자유

구역간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함

-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조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부족 등 영업기반의 미비는 외투기업이 경자구역 입주 를 꺼려하는 원인이 됨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 이전에 내국기업의 투자를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급해 해소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또한 기대하기 어려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와 지방세의 감면규정이 상이하여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지방세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법인세 감면기준 변경 필요)
 - 법인세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이전 하는 경우
 - 지방세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이내 라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등의 지역으로 이전 시 혜택 가능)

【개선방안】

- 1안)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였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p>	<p>*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 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p> <p>2.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2.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내의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내의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 2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수도권의 정의를 변경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도 법인세 혜택 부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단서 신설></p>	<p>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p> <p>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한다.</p>

8.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해외 U턴 기업의 세계 지원

【현 황】

-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내 경제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Reshoring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중이며, 우리나라도 경제자유구역 내 U턴 기업 입주를 위해 관련법 등을 개정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9호) 제25조 ③】

- ③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임대할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거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부받은 해외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투자규모, 입주희망 부지면적, 임대기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용지임대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자구역 내 입주를 희망하는 U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없는 실정
-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의 대상은 외국투자기업 중심이며, 이에 따른 국내기업 및 U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은 국내기업의 비중(91%)이 외국기업(9.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황(2014년 말 현재)〉

(단위 : 개)

구분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항해		세민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전체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총합계
사업체	2,162	76	311	50	3,139	69	354	10	5	0	2	2	68	2	59	2	6,100	211	6,311
회사	807	74	227	47	744	69	199	10	2	0	2	2	18	2	30	2	2,029	206	2,235

* 사업체(법인, 비법인, 상점 등 개인사업자), 회사(법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세제 및 자금지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하고 있어, 현재의 투자 및 운영 현실과 괴리가 존재

□ 또한 토지가격이 저렴한 산업단지와 조세감면 인센티브가 있는 기업도시 등과 비해 경자구역의 U턴 기업의 입주 유인은 매우 미약

○ 산업단지*, 혁신도시, R&D특구, 기업도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보다 열위

* 기업도시 :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신설 또는 이전 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3년간 100% + 2년간 50%), 지방세 감면은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제정가능

** 산업단지 : 국세(감면 없음), 지방세(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감면)

□ U턴기업의 경자구역 입주와 함께 기타 지원제도가 가능할 경우 정책 입안의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임

【개선방안】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에 U턴 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

현행	개정(안)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과 경제자유구역 내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단 국내 사업장은 없어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 |
|---|--|
| <p>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p> | |
|---|--|

9. 기업도시 일부 준공 제한 완화

【현 황】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부지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할지라도 단계별 조성 계획 범위 내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준공을 할 수 없음
-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공공대신 민간이 낙후지역개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조성계획 범위 내 공사 완료전에는 일부 준공을 허용치 않는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 조성사업의 경우는 일부 준공을 허용
- 또한 민간이 대규모 도시를 개발하는 유사사업 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경우도 일부 준공을 허용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 제14조】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 7.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태안기업도시 내 골프장 #1, 2 등(146만㎡)의 경우 별도의 단계로 승인받아야만 준공이 가능함에 따라 2014년 6월 공사 완료 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중 단계별 조성계획을 2014년 12월에 변경한 후 2015년 10월 준공 완료하였음
- 골프장 #3, 4 등 (170만㎡)의 경우도 ‘16년 6월 공사 완료 예정이나, 준공을 위한 실시계획 중 단계별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인허가 도서 작성 중에 있음
-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 승인된 실시계획 중 단계별 조성계획 범위와 실제 준공부분이 다를 경우마다 실시계획 중 단계별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는 등 일부 준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절차의 수행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준공이 요원하고 이로 인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음

【개선방안】

- 공공 등이 사업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개발사업과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준공을 허용
- 일부 준공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7조(준공검사)</p> <p>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1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17조(준공검사)</p> <p>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삭제 : 제1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10.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 연장

【현 황】

-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6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할 수 있음(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 반면, 「도시개발법」 제2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광진흥법」 제61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등에서는 재결 신청기간을 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로 규정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영암·해남 기업도시(구성지구)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시 개발구역 면적 20,959,540㎡ 중 공유수면 면적은 15,938,790㎡(약 76%)으로서 최초 공유수면 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 체결(2010.08) 후 토지소유권 확보 시(2016.08 추정)까지 약 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보상협의회 구성과 일반적인 토지보상업무 추진 시 소요기간을 감안할 경우, 재결의 신청 가능기간까지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협의를 상기 전체 개발면적 중 공유수면면적을 제외한 사유지 5,020,750㎡의 방대한 면적을 협의를 통해서만 토지 보상을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외지인들이 약 40%가 되어 재결 신청의 일몰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업차질이 불가피

【개선방안】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발사업 관련 법률 상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상 재결의 신청기간을 대폭 연장하거나,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개발계획에서 정한 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로 허용 필요

11. 기업도시에 대한 재정, 기반시설 명시화

【현 황】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내에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서 현실적으로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등에서는 기반시설 관련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법 시행령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 또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는 상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낙후지역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국고지원이 미비하여 결국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인해 심각한 사업성 악화가 우려
-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며, 특히 국고 지원이 미미하여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부담케 되는 경우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

【개선방안】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관련 규정을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인 ‘~ 지원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방안 필요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

12.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보유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현 황】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주도로 낙후지역을 개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공공적 측면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중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고율의 재산세 적용과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부과

※ 1) 재산세 세율 : 종합합산 0.5%, 별도합산 0.4%, 분리과세 0.2% (공시지가의 70% 적용)
2) 분리과세 적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미 부과
3) 태안기업도시는 재산세가 2016년까지 50% 감면되며, 2015년 기준 재산세 8.2억원, 종합부동산세 20.6억 원 등 총 28.8억 원이 부과 고지

-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유사한 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경우는 분리과세가 적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 적용으로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재산세로 납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 제24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대상 적용으로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재산세로 납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4호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제31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전부동산

□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처음으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감면

□ 재산세 면제 및 감면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관련 세율은 다음과 같음

*** 세율**

구 분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5,000만원 이하 1,000 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재산세가 100% 부과되는 2017년 예상세액 : 재산세 17.2억 원 / 종부세 55.7억 원 → 총 72.9억 원 (매년 연평균 지가 14% 상승 고려)

□ 이러한 과도한 조세부담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 유사한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他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재산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적 조세로서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공공적 측면이 강한 사업인 기업도시 개발토지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개선방안】

- 공공적 측면이 강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도시 조성, 他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발토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간 조세형평성 확보, 종부세의 합리적 부과 등이 실현되도록 분리과세대상 토지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p> <p>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p>	<p>*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p> <p>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p>
<p><신설></p>	<p>3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p>

13. 기업도시내 관광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절차 마련

【현 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한 객실당 분양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부부 및 직계존비속 만을 수분양자로 하는 것(단,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공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을 허용하지 않음
- 다만,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경우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음(공유제 콘도 명문화 규정은 없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에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는 따로 명시된 규정은 없음
-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에 명시된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부부 및 직계존비속 만을 수분양자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분양은 어려운 실정

【개선방안】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관광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 마련토록 규정 신설
-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을 1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

현 행	개정(1안)	개정(2안)
제38조 2(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본 조 신설>	제38조 2(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는 법 제12조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8조 2(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14. 기업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현 황】

□ 기업도시 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

○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이 가능*해 기업도시와 경제 자유구역 간 차별

*설립요건 :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수요 위축 우려
 - 기업도시 내 외국기업 유치 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필요
 -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상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어 외국기업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외국 의료기관 유치는 관광형 기업도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
 - 골프장, 카지노 등 위락시설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의료관광 등 새로운 분야의 발굴·육성 필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현황〉

지역	면적	개발 컨셉	주요시설	추진현황
태안	473만 평	웰빙형 관광레저도시	골프장, 테마파크, 생태공원, 농촌체험형 시설 등	조성공사 진행 중
영암·해남	1,000만 평	녹색관광 레저도시	골프장, 카지노, 종합 스포츠 센터, 호텔, 생태서식처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협의 중
무주	245만 평	선진국형 휴양레저도시	골프장, 주말농장, 예술인 시설지구, 향토테마 빌리지 등	개발계획 취소

【개선방안】

- 기업도시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허용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 ⑤ (좌동)</p> <p>⑥ <u>개발구역 안에서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u></p>

V. 건설 · 건축 · SOC

◀ 목 차 ▶

1. 기술형 입찰공사의 10개사 공동도급 제한 완화	151
2. 대기업의 공공분야 입찰 제한 완화	154
3. 건설보조금 요구액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155
4.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156
5. 민간기업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권 부여	157
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159
7.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161
8.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제도 개선	162

1. 기술형 입찰공사의 10개사 공동도급 제한 완화

【현 황】

□ 공동계약 원칙, 제한근거

-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를 근거로 공동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공동계약)〕

□ 기술형 입찰공사의 10개사 공동도급 제한

- 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4항(공동계약)〕
- 기술형 입찰공사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기술제안 입찰

□ 지명경쟁 입찰공사의 10개사 한정 입찰

- 특정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국가기관)에서 시평액 10개사에게만 입찰기회를 부여하여 공평한 입찰기회를 제한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시공능력평가액 10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은 국내 공공공사실적 뿐만 아니라 민간 및 해외 실적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 공공공사의 실적이 미약함에도 해외공사의 수주를 통하여 국위선양을 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로 인하여 국내 공공공사에서 공공도급의 제한으로 국내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불합리

- H사의 경우, 매년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에서 10위 안팎의 순위를 부여받고 있음
 - 시평액 기준 평가는 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당산업에 먼저 진입하여 M/S를 확보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어 시간이 흘러도 그 순위가 거의 변동이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러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시평액 산출의 결과를 현재 대부분의 공공공사에서 입찰 및 규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
 - 예를 들어, H사가 시평액 10위권 밖에 위치했을 경우, 공공공사의 입찰참여 기준을 10위권내로 설정해 버려(시평액 10위권내 지명경쟁입찰) 입찰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반대로 당사가 시평액 10위권 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10개사 공동도급 제한이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아, 1위~5위 까지 건설사(소위, 메이저 건설사)와 J/V(공동도급)을 제한하여 수주경쟁력을 상실해 공공공사 수주시 불이익이 있음
 - 해당 규제로 인해 10위권내 형성된 건설사는 오히려 10위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이 현실

□ 상위법령의 제한 근거가 없고 및 계약체결방식 자유의 원칙에 위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해야 하며, 공동계약은 그 성질상 공동도급 구성원 선택의 자유” 라고 명시하고 있어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공동도급을 제한할 수 없음

□ 대형 건설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저해 및 국제 경쟁력 약화

- 10개사간 공동도급 제한으로 기술력의 공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

【개선방안】

- 1안) 10개사간 공동도급 제한 전면 해제

□ 2안) 상위 10개 업체 중 미실적 업체의 구성원 참여 허용

□ 기술형 입찰공사의 10개사 공동도급 제한을 없애고 자유로운 J/V 구성하도록 허용

○ 공공공사 발주의 경우 특정 순위 지명경쟁 보다는 대부분 기술제안형 공개경쟁 입찰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

기대효과

- 기술형 입찰의 근본 취지에 맞게 기술개발과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상위 건설사간 기술공유를 통하여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2. 대기업의 공공분야 입찰 제한 완화

【현 황】

- 공공 공사, 공공기관 건물관리 등 공공 분야에 대한 대기업 계열사 입찰제한
 -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인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공공분야사업에 대해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지만, 각 계열사들의 Market Position과 사업역량이 다소 미달되는 회사들도 있는 것이 현실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써 모기업의 재무적 지원을 받아 사업분야를 단기간에 잠식시킬 수 있는 위험 등 역효과도 일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나,
 - 사업분야에서 각자의 경쟁력으로 치열하게 승부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집단 계열사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것은 불합리

【개선방안】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자산 및 매출규모가 월등히 높은 기업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그 기준 이하의 집단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
 - 현재 자산 5조 원 기업과 자산규모 100조 원 회사들이 같은 규제에 묶여있는 것은 기업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3. 건설보조금 요구액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현 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 도로, 항만은 총투자비의 30% 이내, 철도는 총투자비의 50% 이내로 건설보조금 지급한도 설정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가격경쟁의 유도로 인해 사업자간 출혈경쟁이 심화되어 건설보조금 지원이 총투자비의 10% 이하이거나 0원인 사례가 발생
 - 입찰 시 건설보조금 요구액을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져 건설보조금 지원비율이 급락
 - *2002~2003년에 제안된 10개 민간제안도로 사업 중 7개 사업이 건설보조금이 0원임
- 건설보조금 축소는 통행료 상승 및 사업리스크 증가로 이어져 민자사업의 활성화 저해
- 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건설보조금 지급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고속도로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50% 내외의 건설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민간사업자는 건설보조금 요구액을 평가해 건설보조금 지급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불합리

【개선방안】

- 건설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보조금 요구액 평가 시 건설보조금 만점기준 상향 : 최소 20%

4.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현 황】

□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만 부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

○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부가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민간과 공공 사업자간 불평등

○ 고속도로 건설·운영이라는 동일한 성격의 공공사업을 시행함에도 민간사업자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불합리하게 차별

○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상이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위배

□ 부가가치세로 인해 민자도로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어 도로 이용자의 반발과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사비 회수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면제 필요

【개선방안】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 민간기업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권 부여

【현 황】

- 현행법 상 일정 기준 이상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발주청에 해당하는 자는 제58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를 선정(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 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발주청¹⁰⁾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④ 제3조 제2호 부터 제7호 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

1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5.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 허가권자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의 자격을 가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 기관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권을 갖는 반면, 민간사업자 및 사업시행자(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제7호)에 해당하는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권이 없음
- 건설기술진흥법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하여도 건설사업 관리를 입법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으며,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관련 기술자는 해당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승인 및 감독기관 중심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자 선정권 부여는 재검토가 필요

【개선방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발주청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주체 변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④ 제3조 제2호 부터 제7호 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 1~2호 (생략)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 (당초)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 (변경)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 (당초)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변경)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단,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 일 것)
 5.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 (당초) 허가권자 → (변경)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발전사업자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당초)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 (변경)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현 황】

- 중소기업청은 중소 자재 제품업체 보호를 위하여 별도 지정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운영 중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 지정요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
- 지정현황 : 127개 제품(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327호, 2015.12.30)
- 대상공사 : 종합 20억 원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3억원 이상
- 공공기관 구매방법 : 대상품목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직접구매 가능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중기제품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해당 공사에 필요하고 원하는 자재를 건설업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하지 못 함
 - 기술개발에 소극적인 중기제품으로 시공함에 따라 시공 후 시설물 하자 및 심각한 안전사고 빈번 발생

<p>◆ LH 아파트 3채중 1채 하자, 사망사고까지 발생(머니위크, 2014.8.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가 준공한 아파트 3채중 1채 꼴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신발장이나 주방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입주민 자녀가 깔려 사망하는 등 문제 심각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LH가 준공한 아파트 10만 2461세대중 하자발생은 3만 933건에 달함 - 특히, 골조균열,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기구, 테라스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전체 하자 대비 17%(5151건)나 차지 ○ 실제로 LH가 신축한 부산 정관1단지의 경우 지난해 2월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 2명이 두개골이 함몰 등 큰 부상을 입었으며, 올해 5월 같은 단지에서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한 신발장 및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골조,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 테라스난간 등은 전부 중기청이 지정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대상

-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구매 조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로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배치

- (공사비 상승, 계약관련 행정부담 가중) 일괄발주와 비교 시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구매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하여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 수요시점 이전에 조달 요청을 해야 하고, 일별 납품 요청서 제출, 조달청 대금 납부 등 발주기관의 복잡한 다단계 행정 절차 필요
- (공사수행 효율성 저하) 건설업자의 자재 설치 노하우와 시공관리능력 등을 활용한 효율적 시공에 제한을 받게 되어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으로 연결됨

【개선방안】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 ① 국가 82억 원, 지방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축소, ② 턴키공사 제외, ③ 상시퇴출 시스템 도입, ④ 조합을 통한 업체선정 방식 개선, ⑤ 2진아웃제 도입, ⑥ 적기미 지급시 사급전환 가능

7.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기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 일부를 중복인정하고 있으나, 시행전 건설업자를 제외하여 이미 2개 이상 다수업종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역차별 초래 및 형평성 상실

<p>❖ 사례 (건설법시행령 개정 시행, 2010.2.11)</p> <p>▷ 자본금의 경우 이미 인정받은 업종의 자본금 1/2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1/2을 중복인정</p> <p>① 시행 전 이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함께 보유 → 토목(7억 원)+건축(5억 원) ⇒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12억 원</p> <p>② 시행 후 토목공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추가등록시 → 토목(7억 원)+건축(5억 원) ⇒ 2억 5천만원만 추가 : 총 9억 5천만원</p>

- 기존 중복 보유자는 추가등록 건설업자와 동일 업종을 보유하고 영업범위도 동일함에도 등록기준상 차이를 두는 결과 평등권 침해 소지
 - 등록의 시기가 다르다고 등록기준을 달리 적용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한 건설업자는 등록기준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은 것임
 - ※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평등권 침해에 해당(2001.11.29. 99헌마494)
 - 2008년 수행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같으면서 등록기준이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등록기준을 일원화시킨 바 있음
 - ※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겸업」의 경우 수행가능한 공사범위가 같음에도 등록기준 달리 정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기준 일치시킴(시행령 개정, 2008.6.5)
- 엄격한 기준에 따라 등록하고 있는 기존업체는 신규업체에 비해 비용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처해 공정한 수주경쟁에 반함

【개선방안】

-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2개 이상 다수업종 보유업체도 등록기준 중복인정 적용

8.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제도 개선

【현 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발주처에 건설폐기물 신고의무가 있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공사)〕
- 그 외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처 또는 원도급 건설사 명의로 신고 가능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발주처 명의로 건설폐기물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및 혼합건설폐기물의 기본 종류에 한해서만 발생 폐기물을 인정하여 신고를 접수
- 필연적으로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합성수지(소각대상), 폐보드, 그 밖의 건설폐기물 등의 추가 종류가 있음에도, 발주처에서는 해당 종류 폐기물의 추가적인 반영(변경신고)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기존 건설폐기물 신고 종류 외 추가 건설폐기물 종류가 계약되지 않아 현장내 반출되지 못한 건설폐기물이 보관가능 기한을 초과하여 현장 내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음
- 발주처와의 협의 지연 또는 불가로 원도급사가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관련 법규사항에 위반됨

【개선방안】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 신고 시 기본적인 건설폐기물 종류

선정을 의무화하는 내용(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등)을 반영한 환경부의 세부 업무지침 등을 제정하여 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적법 반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 또는 발주처와의 충분한 협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의 경우, 원도급사 명의로 건설폐기물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항을 신설

VI. 유통 · 물류

◀ 목 차 ▶

1.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167
2. 대규모 점포 출점규제 완화	169
3.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차량수급 및 운영범위 제한 완화	170
4. 민간택배에 대한 차별규제 개선	173
5. 택배업종의 외국인 고용 허용	176
6. 물류센터의 입지 제한 완화	178
7. 물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80
8. 안전설비 투자(유통합리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182
9.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184
10. 해외 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규제 완화	186
11. 국제선 운임의 인가 시 기획재정부 협의절차	188

1.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현 황】

□ 유통산업발전법

-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24시 ~ 익일 10시), 개점 한 달前 사전예고 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등)

- 이해당사자 합의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 대·중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 등

- 신규출점 시 인근 기존상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나, 일부 상인이 과도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출점 가능지역이 큰 폭으로 감소, 대형유통업체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 G사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

- 농수산물 생산자, 중소기업 등 매출 감소로 인해 국내경기 위축

- 대형유통업체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 의무휴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 매출 급감(연 2조 800억 원 매출 감소)

□ 소비자 불편 심화 :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소비자 증가효과 미비

- 72.6% 소비자들은 ‘다른 요일에 대형마트 이용’ 또는 ‘쇼핑 포기’ 응답

- (출처: 정민지(2014), 소비자의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에 대한 인식과 전통시장으로 전환의도 연구)

□ 출점 제한 및 투자비용 증가

- 상생법의 사업조정제에 따른 신규 출점 시 인근 기존 상인과의 보상합의 및 한정된 지역에 점포 오픈 경쟁에 따른 비용 증가

농어민,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 피해 : 연 8,690억 원(추정)

○ 농어민 3,997억 원, 중소기업 4,693억 원

신규 채용인원 축소 등 고용 감소 : 32,299명 일자리 감소(추정)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취업유발계수 적용 계산)

관광특구 및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 불편
가중(용산아이파크몰 : 면세점(무휴), 대형마트(휴무))

【개선방안】

내수소비 증대, 고용창출, 물가안정 기여 등 유통업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대한 정부, 정치권 차원의 노력 필요

각 지역별로 영업시간에 대한 자율적 논의 필요

의무휴업의 경우 일률적 월2회 공휴일이 아닌 각 지역별 평일 자율휴무로 진행

○ 지자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평일 자율휴무 논의 분위기 확산

<現 평일 자율휴무 지방자치단체 현황 (총 34개 시군구)>

시·도	평일 자율휴무 지방자치단체명
세종시	세종시
울산시	남구, 중구
경기도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홍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전라남도	나주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관광특구 및 외국인 매출비중이 높은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예외 적용 검토 필요)

2. 대규모 점포 출점규제 완화

【현 황】

□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제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3)

* 전통시장보존구역: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 범위(~2020.11.23 일몰연장)

○ 기존 매장도 매장면적이 10% 이상 또는 10% 이하 점진적 확장 시 제한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헌법상 영업의 자유, 소비자 선택권 침해 소지

○ 중소유통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조치로 영업의 자유 침해

○ 중소유통업체의 보호를 위해 다른 유통업체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중소유통업체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

□ 대규모 점포 대상의 역차별

○ 대형마트, SSM 등의 출점은 제한하면서 개인 중대형슈퍼마켓 등의 출점은 가능하여 사실상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

【개선방안】

□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출점 및 변경관련 규제 완화

3.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차량수급 및 운영범위 제한 완화

【현 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거, 정부는 2004년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국내시장의 영업용 번호판의 등록은 불가하고, 화물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의 운송업 위탁은 개인만 허용하고 법인은 불가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04년 운송사업 허가제 도입 이후 신규 사업 허가 및 차량 증차를 엄격히 통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사업 공급기준 고시)
 - 1997년 신고제 도입 이후 차량공급의 과잉이 발생되어 화물연대에 의한 물류대란 발생으로 허가제 도입
 - 정부는 매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화물차량의 수급조절기능을 담당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① 화물차량 증차 관련규제

□ (공급 불가 수요 증가) 화물차량 확보의 어려움

-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물동량은 증가추세로 화물차량(영업용 번호판)의 공급수량은 2004년부터 고정적(택배차량 제외)이어서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을 위해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양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음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현재 영업용 번호판은 “권리금” 형태의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추세로, 개인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장벽이 높아짐
- 대다수의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은 영세하며, 높은 시장 진입장벽으로 더 이상 개인이 진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움
-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대형단위로 물동량을 운반하는 기업에 한하여,

일정 비율의 자가용 넘버로 배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부양한다면 고용창출 효과와 차량수급이 용이해 질것이라 판단

□ (불법 자가용 화물차 운행) 영업용 차량 부족으로 9천여 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차가 불법 운행

○ 늘어나는 물량 감안 2012년부터 2차례에 걸쳐 2만대 이상 자가용 차량을 화물차동차로 전환을 허용하여 증차

○ 물동량 대비 소규모 증차로 인해 택배화물차량은 여전히 부족하여 안정적인 집배송 N/W 구축에 한계가 있음

□ (불법 증차로 피해자 발생) 불법으로 증차된 번호판 매수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 브로커와 결탁하여 불법으로 번호판을 증차 한 후, 일반 운송사업자에게 매매하여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② 화물차량 운송범위 위탁 제한(사업 확대의 가능성 제한)

□ 회사에서 화물운송종사자 인력관리의 리스크와 비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A법인에서는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하고, B법인에서는 배송기사 채용 및 교육을 함

○ A법인은 B 법인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B법인은 배송기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전제조건 : A법인 → B법인에게 위/수탁이 법적으로 가능해야함)

□ 현재 시장의 영업용 번호판 높은 가격으로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움 → 자본력 높은 기업은 가능. 기존 인력관리가 개개인을 상대로 관리하다 보니(인력 이탈, 물류서비스 교육 어려움) 통제 어려움 존재 → 채용/교육 전문력 보유 기업은 통제 관리 가능

○ A법인 + B법인 조합시, 차량 확보와 운영에 도움 될 것이라 예상

【개선방안】

□ 물동량을 대형 단위(매출액 1조 원 이상)로 출고하는 업체에 한하여, 일정비율(30%)의 자가용 차량 배송 가능 부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종을 취급 화물별로 구분하여 업종체계 개편

현행	개정(안)
<p>*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p> <p>톤급별 업종 구분은 다음과 같다.</p> <p>용달(1톤 이하), 개별(1톤 초과 ~ 5톤 미만), 일반(5톤 이상)</p>	<p>*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p> <p><u>취급하는 화물의 운송서비스를 고려하여 택배 서비스업, 컨테이너서비스업 등의 업종 추가</u></p>

□ 운송범위 규제조건 완화

☞ 법인 ↔ 법인간의 차량 임대 및 지입형태 가능

기대효과

- 고용창출 효과 및 차량 수급 용이
- 물동량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
- 택배종사자 피로도 해소 및 사고 예방, 정시 배송 등 고품질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

4. 민간택배에 대한 차별규제 개선

【현 황】

- 동일한 택배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민간 택배업체와 외국계 특송업체, 우체국은 서로 상이한 법률을 적용
 - 민간 택배업체 : 화물운송사업법(제56조) 적용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불가, 차량 증차도 등록제로 화물자동차 공급 제한에 영향을 받음
 - ※ 국토부는 2012년과 2014년 각 약 12,000여대 수준의 택배전용 번호판 ‘배’ 를 증차하였으나, 이는 택배 신규 입사자와 신용불량자 등 자기명의로 차량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차 불가능한 상황
 - 외국계특송기업(FedEx, DHL 등) 우체국택배는 각각 항공법, 우편법의 적용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가능, 증차 제한이 없음
 - ※ 외국계 특송업체는 항공법(제2조 및 제139조)에 의해 국제상업송달업으로 분류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택배물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화물차량의 공급제한에 따른 차량부족으로 물량처리에 어려움
 - TV 홈쇼핑,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물량 증가에 따라 택배시장이 비약적인 발전과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음
 - ※ 2015년 경제활동 1인당 택배 이용횟수 67.9회/년
 - 특히, 택배산업은 전체 유통시장의 15%를 차지하는 대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택배 종사자는 2015년 4.9만 명으로 전체 육상화물 운송사업자 11%를 점유하여 매년 5천명의 고용창출을 유발
 - ※ 택배물동량은 2015년 18억 2천만 박스로 2000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하였고 최근 3년간 7% 이상 성장세
 - 택배는 대규모 터미널, 전국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운송차량만 있으면 누구나 택배산업 진출이 가능해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업체 간 과다 출혈 경쟁으로 택배단가 현실화가 어려움
 - ※ 현재 전국적인 배송네트워크를 갖춘 택배업체는 20곳이 채 안되지만, ‘택배’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

○ 차량부족에 따른 운송시간 지연, 택배서비스 품질저하 등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

※ 차량당 1일 평균 화물 취급량은 약 180개(적정 취급량 140개)

□ ‘택배’는 화물차를 운송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는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점사업 3가지만 명시되고, 택배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일사업을 하는 택배업체, 외국계 특송기업(FedEx, DHL 등), 우체국택배 등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음

○ 외국계 특송기업/우체국은 자가용 차량 운행이 가능하나, 국내 택배기업은 영업용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어 상대적으로 외국계 특송기업 및 우체국 대비 서비스 경쟁력 저하(운송시간 지연, 택배서비스 품질 저하)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음

※ 택배업체는 차량구입이 힘들어(번호판값 약 700만원) 10,000대 이상(추정)의 자가용차량을 편법으로 이용

※ 2012년 증차결정 당시 택배업계에 부족대수는 약 16,500대 정도였으나, 11,193대가 증차되었고, 2014년 당시 8,000대 가량을 부족하게 증차, 이에 택배시장에서는 항시 차량부족으로 인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행이 문제가 되었고, 현재 시장내 운용되는 자가용 차량은 약 12,000대로 추정

○ 우체국 택배는 공공인프라를 기반으로 우편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책적, 법률적 보호장치를 활용하여 민간 택배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여건 조성

－ 우체국 택배 운행차량과 일반 택배 차량과 법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우체국 택배는 우편법이 적용되어 증차에 제한이 없으며, 안정적 차량 수급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

<우체국 택배와 민간 택배사 간 불공정 경쟁구조>

구 분	우체국	민간택배사
차량 증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법“과 관용차량 규정의 특례적용 으로 화물차 증차 허용 - 매년 150대 수준 증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2004년 이후 화물차 증차 금지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전국 25개 우편 집중국 설치 - 2002년부터 정부예산 약 1조 2천억 원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 없음 - 자체 재정으로 택배터미널 구축
불법 주정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체국 택배차량은 통행 및 주정차 시 우편법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주정차 예외 없음 -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권역과 시간대를 설정하여 일부 허용

【개선방안】

- 택배법 제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별도 택배업 규정
 - 택배사업 진출을 위한 허가기준(터미널 규모 및 인프라 등) 제시
 - 택배 영업용 차량의 증차기준 마련, 양도·양수 금지

- 택배차량의 시장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 회복을 위한 상시 수급조절제 시행
 - 단기적으로는 전월 또는 전분기 물동량 증가분 대비 차량 증감차를 조정하는 상시 수급 조절제를 시행
 - 장기적으로는 택배차량의 정부에 의한 인위적 조절을 약화하고, 허가제를 폐지하여 시장의 수급 자율 조절기능을 강화

- 택배업을 신설하고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집/배송 차량 증차 허용
 - ※ 택배전용 번호판 공급을 통한 차량 부족문제 해소

 - 택배업체도 외국계 특송업체와 동등하게 자가용 차량을 활용하여 영업 가능토록 법 개정 혹은 유권해석 필요

- 우체국과 민간택배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 필요
 - 차량 증차제한, 불법주정차 허용 등 동일한 사업환경 조성 필요

기대효과

- 택배업종의 별도 분리로 차량 증차 등 차별화된 법 적용이 가능
- 대국민 택배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신뢰받는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발전 가능
- 택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육성 가능
- 택배업계의 원활한 차량확보가 가능해지며 화물처리 속도 증가,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시장 환경 개선

5. 택배업종의 외국인 고용 허용

【현 황】

- 외국인력 도입 허용 업종은 5개 업종으로 한정(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물류 관련 업종은 서비스업 중 냉장냉동 창고업만 해당되어 물류영역의 극소수만 포함(출입국관리법)
-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외국인 종사비율은 1% 이하이며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물류터미널 인력수급 문제)터미널 내 상하차·분류 인력수급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
 - 내국인(청년층) 현장근무 기피로 인해 인력확보에 어려움
 - 물류센터 이전 및 구인난에 따라 아웃소싱 업체가 수시로 변경
 - 잦은 인력 변동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
- (불공정한 인원 배정) 쿼터제를 적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배분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어 형평성이 침해
 - 2016년 서비스업 일반 외국인 인원 배정비율은 0.2%에 그쳤으며, 제조업은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별 인원배분>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8,000 [56,000+ α (2,000)]	44,200+ α_1	6,600+ α_2	2,600+ α_3	2,500+ α_4	100+ α_5

【개선방안】

□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중 서비스업에 일반창고업 추가 시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취업이 가능

현 행	개정(안)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업, 서적/잡지 출판업, 음악/오디오 출판업, 냉동창고업 등 <추가>	<좌동> <u>일반창고업</u> (상온 물류창고업 추가)

□ 외국인 근로자 허용 쿼터제 인원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택배 하역 영역의 외국인 고용 허용 확대

- 과거에는 제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및 업무의 단순성으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했으나, 최신 산업성장 및 트렌드를 고려하여 외국인 업종배분 조정
- 매년 개최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인 ‘쿼터배분 기준’ 을 재산정하여 업종별로 균등하게 배분

6. 물류센터의 입지 제한 완화

- 산업단지내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물류센터로의 입지사용 계획이 곤란
 - 예컨대, 지구단위계획안에서 물류창고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50%는 제조시설로의 사용의무(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산업시설용지(연면적의 50% 이상 확보)(진천산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물류시설만 허용 가능, 공장이 아닌, 일반적인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50% 이상 설립이 불가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자연보전권역 규제, 입지규제로 “물류센터의 신설 입지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입지적으로 물류시설의 신설이 곤란(용도 →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등)
 -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관련)로 수도권인근 물류센터/공장용지 제한사항
 - －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공장총량제(물류센터 포함) 유지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나, 수도권의 규모경제 실현을 위해 수도권 공장(물류센터) 총량제를 폐지 또는 완화가 기업의 입장
- 지방거점에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인력수급이 곤란하고, 주변의 편의시설과 부대시설로 인한 규모의 경제나 동종의 유사산업들이 집합됨으로써 누리는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

- 또한, 물류센터의 경우, 배송(수송)물류비가 총 물류비의 50% 이상을 차지
- 따라서 물류비의 효율적 측면에서 물류센터 거점(지리적 특성)의 위치가 중요하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나라 국토구조 상 수도권에 물류센터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인 기업운영이 초래
- 산업시설용지에서 독립적인 창고시설(외부 상품 물류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
 - 공장 원재료 보관을 위한 부대시설(창고)은 사용이 가능, B사는 지구단위계획상, 복합용지를 별도로 신청·등록하여 부지 용도에 창고시설이 가능토록 변경함

【개선방안】

-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세분화하여 물류센터 입지 타당성이 높을 경우, 입지규제의 완화
 - 물류센터용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내 물류시설(창고보관업 등)에 대한 용지 사용규제 완화 필요
 -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개선과 자연보전권역 완화

7. 물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현 황】

□ 장치산업인 물류산업의 특성상 물류기업들은 인프라 확보 및 설비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물류정책기본법 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또한 늘어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고 보다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도권 인근 물류센터와 터미널을 구축 중

* 쿠팡은 2017년 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21개 물류센터 구축계획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물류 표준화 및 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고효율 운영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물류기업의 평균 수익성은 매우 낮은 수준 (이익율 3% 미만)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보관설비와 같은 동일한 설비에 투자한 경우에도 물류업체는 제조업체에 비해 투자세액의 공제 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

○ 제조업체 : 제조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제1항, 제2항 등에서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과 첨단기술설비를 포함하여 생산성 향상 투자 세액공제 가능

○ 물류업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제8항에서 물류 프로세스 개선 설비만 투자세액 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24조의(생산성 향상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개선방안】

- 물류기업의 수익성 향상 및 재투자 유발을 위해 국내외 물류 인프라(시설/장비 등) 구축 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예 : 3~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현행	개정(안)
<p>*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 시설 및 첨단기술 설비 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 시설 및 첨단기술 설비 1. ~ 4. (현행 동일)</p> <p>5. <u>물류시설 및 물류자동화 설비</u> 가. <u>실시간 입출고 관리, 자동 상하역로봇 등 첨단 물류기술이 도입되어 전체 공정 물류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물류인프라 시설</u> 나. <u>물품피킹, 분류기능을 전자제어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하는 물류 설비</u> 다. <u>기타 물류 자동화 설비</u></p>

기대효과

-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 높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업의 한 분야인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물류시설 투자 유도 가능
- 실효성 높은 세제지원 혜택수혜로 연간 1,400억 원의 재투자 효과 발생
 - 거점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류기업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우선 과제로써 매출의 3% 이상은 인프라 및 시설투자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물류비의 3% 투자,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감면 가정 시 연간 약 1,400억 원의 세금감면분을 산업에 재투자 가능
 - * 국가물류비 2012년 기준 152조 원
- 물류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연간 1,8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
 - * 운송서비스업 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 13.5명 적용
- 고효율의 인프라 투자와 운영으로 물류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8. 안전설비 투자(유통합리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현 황】

- 일관 물류를 수행하기 위해 야적장 및 항만 접안시설은 핵심시설로 컨테이너 야적장은 창고시설과 그 목적이 동일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보아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창고시설〔조세특례제한법 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기술유출 방지 설비)〕
- 항만 內 하역장비 中 컨테이너 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리치스태커 등과 화물이 비정형화된 화물을 하역하는 언로드 및 페이로더 등 벌크화물 하역장비는 사실상 동일한 하역업무를 수행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창고시설은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나, 야적장과 접안시설은 사실상의 창고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함
 - 야적장 및 항만 접안시설은 항만 내 시설로써 관계자의 진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항만내 물류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 또는 장기간에 걸쳐 물품의 보관 및 운반을 위한 시설인 창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창고시설로 구분되지 않음
- 컨테이너 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리치스태커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나 동일한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벌크화물 하역장비인 언로드 및 페이로더 등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개선방안】

- 물류산업이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고려하여 안전설비투자(유통합리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항만하역 內 접안시설 및 야적장을 포함하며, 컨테이너 하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벌크화물 취급 장비도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유통합리화 시설)에 세액공제 대상 추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현행	개정(안)
<p>*별표 3 (유통합리화 시설)</p> <p>1. ~7 (생략)</p> <p>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고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중략)</p> <p>13.컨테이너와 컨테이너하역·운반장비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중략) 컨테이너 크레인, (중략) 트랜스퍼크레인, (중략) 야드트렉터 및 (중략) 리치스태커 <u><신설></u></p>	<p>*별표 3 (유통합리화 시설)</p> <p>1. ~7 (생략)</p> <p>8. 창고시설 등 ----- ----- ----- -----<u>하며, 컨테이너를 보관하기 위한 사실상의 창고시설인 접안시설 및 야적장을 포함한다.</u> (이하 현행과 동일)</p> <p>13. (현행과 동일)</p> <p>17.<u>벌크화물 하역·운반장비컨테이너 하역·운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벌크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일반 하역·운송장비(언로더, 페이로더 등)</u></p>

기대효과

- 물류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 및 투자계획 진행 물류기업 절세효과 예상
 - 해수부는 항만 재생 투자에 2017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하고, 20조 원의 민간유치를 계획(시설안전진단, 보수 등 포함)
 - 노후화된 항만을 재생 투자하여 현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 이루어 질 것으로, 투자 세액 공제 혜택 확대로 수익성을 담보 할 수 없는 민간 물류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 유도

9.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현 황】

□ 지방세법 개정(2006.1.1부)에 따라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및 화물터미널은 분리과세 적용대상이나, 창고 등 그 외 물류시설은 별도 합산과세 적용(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2 제5항, 제27조)

○ 이에 반해 제조업체 공장용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

* 세율 : 분리과세 (과세표준의) 2/1000, 별도합산과세(과세표준의) 2/1,000~4/1,000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물류산업은 차고지, 컨테이너 장치장 등 대규모 토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치산업으로서의 특성상 부동산 보유로 인한 조세부담 가중

○ 적시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사업 확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의 투자 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작용

【개선방안】

□ 산업단지 및 화물터미널 이외의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의 2>

현행	개정(안)
<p>*지방세법 시행령 102조의 2 제102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106조 제1항 13호마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중략)---</p> <p>1. ~ 26. (생략)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p>	<p>*지방세법 시행령 102조의 2 제102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p> <p>1. ~ 26. (현행과 동일) 27.</p>

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
를 포함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
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7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에 따른 집배송센터

기대효과

- 토지보유에 따른 세제부담 완화 등 우호적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확대
- (세제부담 완화로) 물류원가 절감으로 물류비 감소

10. 해외 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규제 완화

【현 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에서는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판매중개업자와 구매·수입 대행업자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이 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에서는 수입·판매·대여업자의 경우 법이 정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시·도지사가 강제로 개선·파기·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한 인증없는 상품 구매대행 금지규정의 개정을 검토중
- 국내외 온라인 유통시장 환경 변화 및 소비자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정부의 ‘수입방식 다변화 정책’에 역행
 - ※ 정부는 수입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독과점에 있다고 보고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확대를 지원해옴
 - ※ 전파법의 경우 동일 규정 신설 후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시장 혼란 등 비판 여론으로 단속 유예 결정, 결국 3개월만에 규정 폐지

【개선방안】

- 수입 물가 인하의 수단으로 병행수입 및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

현행	개정(안)
<p>[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p> <p>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 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 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전기용품안전 관리법]</p> <p>제19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收去)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p>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p>

기대효과

- 병행수입 및 해외직구 활성화로 수입물가 인하

11. 국제선 운임의 인가 시 기획재정부 협의절차

【현 황】

- 여객 운임 및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제 국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신고제 국가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항공법 §117 및 동법 시행령 §45)
- 인가제의 경우에는 항공운임 설정 및 각종 요금 변경 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외 기획재정부 협의절차가 추가로 필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국토부의 인가 후 동일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운임 인상 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항공시장에 대처 불가
 - 운임 인허가 및 협의절차는 국적사 및 외항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협의절차는 실제로 국적사에만 추가하여 외국항공사 대비 역차별
- 국제선 여객 항공운임(Tariff)은 시장 판매가의 최고 한도 개념으로, 실제 판매가는 시장 상황 및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 됨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등 이유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운임인가·신고규제가 강하여 한국발 국제선 인가제 운임의 경우 2006년 이후 인상하지 못하고 있음
 - 운임 인가 신고제의 처리기한(인가제: 17일, 신고제: 7일)으로 시장공지가 늦어져 운임의 탄력적 운영이 제한
 - ※ 외국의 경우 항공운임은 항공사들의 자율에 맡기며, 전자신고 후 즉시 유효한 운임으로 사용

【개선방안】

- 인가제 국가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시 기획재정부 협의 절차 폐지
 - 공공운임이 아닌 항공운임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차별규제 철폐
- 인가제/신고제 처리기한 축소
 - 인가제 처리기한 축소: 현행 17일 → 변경 7일
 - 신고제 처리기한 축소: 현행 7일 → 신고 즉시

Ⅶ. 금융 · 자금조달

◀ 목 차 ▶

1.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완화	191
2.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한도 제한 완화	193
3.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변경절차 신설	195
4.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 증권금융회사 예치의무 완화	196
5.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197
6. 보험사의 구속성보험 규제 합리화	199
7.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서면동의 강제 폐지	201
8.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폐지·완화	203
9.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허용	204

1.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완화

【현 황】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주식의 4%(지방은행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은행법 제16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저해
 -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 시너지 효과의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 대형화의 핵심은 풍부한 자금의 금융산업 유입 여부가 관건이지만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제로 자금유입이 어려움
- 국내자본 역차별 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 잠식 우려
 - 국내 7개 시중은행 중 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제일, 외환, 씨티)가 외국인 소유이며 우리은행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음
 - 향후 우리은행의 민영화시 외국자본에 인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의 자금 유입이 필요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불가능
- 외국에 비해 낙후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 국내은행은 해외 글로벌 은행에 비해 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이 낮고 자산규모 또한 현저하게 적은 상황
 - * 2009년 기준 세계적으로 총자산 규모가 2조 달러가 넘는 은행이 8개, 1조 달러가 넘는 은행은 24개, 우리나라 최대은행인 우리금융지주의 총자산은 0.2조 달러 규모에 불과
- 해외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조건	국가
허용	제한 X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터키, 폴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콜롬비아, 파나마
	대주주 적격성	오스트리아, 바레인, EU, 독일, 그리스 등
	정부사전 승인	아르헨티나, 벨기에, 버뮤다, 볼리비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정한도 초과시 정부의 사전승인	일본, 호주, 체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싱가포르, 러시아, 페루, 노르웨이, 이집트, 중국, 루마니아, 홍콩,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스페인
	조직 제한	필리핀
제한	소유한도 설정	캐나다(규모에 따라 20%, 75%, 100%), 미국(25%), 이태리(15%), 한국(9%)
	완전불허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선방안】

산업자본의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보유비율 폐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6조의2, 제16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삭제

2.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한도 제한 완화

【현 황】

- 국내에 새롭게 도입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은행으로 당초 정부의 도입취지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핵심
- 또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적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
- 국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있는 은행지분 보유는 4%로 제한(은산분리)하여 혁신적인 ICT 업계 등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 은행과의 차별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금융 서비스 변화 추세에 역행

【은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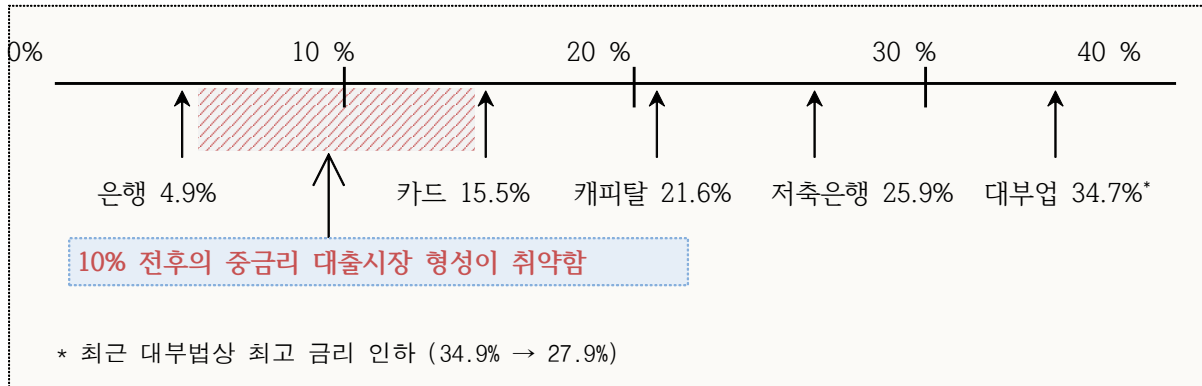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중략)...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 19대 국회,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 규제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2개안 계류 중 (신동우의원안, 김용태의원안)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경쟁 국가들보다 10여년 이상 뒤쳐진 상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 없이는 혁신성 및 차별성 부재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서도 낙오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대출시장은 중금리 대출이 취약한 상황으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 사각지대 제거에 한계가 있음. 제2금융권, 저축은행 역시 신용정보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역량 한계로 고금리 대출시장은 일본 자본에 잠식(가계신용 대출의 48.1%)되는 추세

〈업권별 평균금리와 대출시장 구조(한국은행/여신금융협회/대부업협회)〉



【개선방안】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통한 혁신적인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해소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지분보유 한도를 일부 완화하되 ‘재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금융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은행 장악 등 폐해는 최소화 가능. 지분보유 승인절차,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신용공여 제한 및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를 통해 부작용 해소 가능

3.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변경절차 신설

【현 황】

-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전자지급결제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어야 함
- 금융위원회에서 규정한 모범규준에서는 (“해외 본사” 에의) 아웃소싱을 제한하고 있어 외국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결제대행업 (Payment Gateway: PG) 등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에 의한 무역장벽 발생으로 국외 서비스 이용시 외국계카드만 이용해야 하는 등 소비자후생 저해
-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지급결제의 형태만을 갖고 있을 뿐, 이 서비스로 영업을 전개하지 않으며, 매출도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자금융제공서비스 제공자로 전자금융업 등록대상으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전자지급결제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 없음
 - 구글 체크아웃, 페이팔 등 해외기업의 결제수단은 글로벌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

【개선방안】

- PG 등록시 국내외기업의 역차별 규정 개정
- 전자지급결제의 형태만을 보유하고 그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개정

4.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 증권금융회사 예치 의무 완화

【현 황】

- 현행법 상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해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1항]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금융투자회사 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고객예금을 고유자금과 함께 자율적으로 운용(대출 등)
- 일정규모(자본금 내지 영업용순자본비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을 고유자금과 함께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하여 그 성과에 따라 고객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경쟁체계를 유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이 필요
-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총위험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공시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따라 경영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 * 장외파생상품 인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으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며, 발행대금은 고유재산과 함께 운용

【개선방안】

- 자본시장법 제74조 제1항 삭제 또는 개정
 - (개정안)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현 황】

□ 2009.5월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유인하는 행위를 허용(의료법 제27조 제4항)

○ 하지만,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유치행위 금지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보험사 등의 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

○ 다른 방식으로 규제가 가능함에도 보험회사 등의 진입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최소성과 비례성에 부합해야 하지만, 보험회사가 받는 피해가 커 동 원칙에 배치 우려

※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보호법익과 제한 기본권 사이의 상당한 비례관계)이 인정되어야 함(헌법 제37조 제2항)

□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보험사와 비교, 국내 보험사에 대한 역차별

○ 국내 대형 의료기관은 규제를 받지 않은 보험사와 연계하여 외국인 환자유치에 활용 중

*세브란스 병원(AIG, UHI), 우리들병원(AIG, CIGNA), 자생한방병원(동경화재보험)

○ 보험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수협, 신협 등 공제사업자 및 우체국보험 등에는 제한이 없음

□ 국내 의료산업의 대외 공신력 확보

○ 사업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알선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과도한 수수료 요구, 덤핑 등 불공정 거래 발생

○ 금융기관인 보험사의 인지도와 고객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환자 유치업의

대형화와 의료 산업 전반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

의료산업 및 연계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특화 보험상품 개발촉진, 관광·숙박 및 요식업 등 간 시너지 발생 등 가능

【개선방안】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의료법 제27조 제4항 삭제)

6. 보험사의 구속성보험 규제 합리화

【현 황】

- 보험사의 경우, '겪기' 행위 금지 규제인 구속성보험 관련, 은행 等 他 업권에 비해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음〔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12조(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
- 은행권은 차주가 低신용자·중소기업일때로 한정하여 구속성 상품 규제를 적용中이나, 보험권은 모든 차주에 대해 구속성보험 규제 적용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금융업권간 규제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고객 편의성이 떨어짐
 - 긴급히 유동자금 필요한 보험가입고객(우량신용등급 보유)에 대해, 대출 취급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等 고객의 편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개선방안】

- 보험사에 대해 구속성보험에 포함되는 차주의 범위를 은행권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 우량 신용등급 및 대기업 차주의 경우, 구속성보험계약의 예외 사안으로 명시하도록 시행세칙 개정 추진, 은행권 규제 범위와 형평성 제고
 - ※ 현재 구속성보험 규제를 명시한 감독규정 제5-15조 개정안이 변경예고 中, 해당 개정안은 '구속성보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을 시행세칙에 위임

현행	개정(안)
*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12조(구속성 보험 계약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를 구속성보험 계약에서 제외한다. 1.~7. (생 략)	*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12조(구속성 보험 계약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p><신 설></p>	<p>8.계약자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보험사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 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p>
--------------------	---

기대효과

- 低신용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기관의 요구에 취약한 계층 보호라는 구속성행위 규제의 취지를 감안한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우량신용 고객의 긴급한 대출실행 편의성 제고 및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에 기여

7.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서면동의 강제 폐지

【현 황】

- 2011.12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허용
 - 문서 보관의 효율성 및 보험소비자 편익 증대, 핀테크 활성화 목적
 - 보험업권에서 태블릿PC를 통한 전자청약은 보편화 되었으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담보 계약은 전자청약이 불가(상법 제731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보험업권에만 한정된 서면동의 강제조항은 최근의 기술발전 및 핀테크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보험소비자 편의에도 저해
 - 인터넷 전문은행,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활성화
 - 보험업도 보험모집자가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 대상으로 상품 컨설팅 능력 제고를 추진 중이나, 서면동의 강제조항으로 활성화 저해
 - 서면동의 강제조항은 보험업권에만 해당되어 차별규제 우려
 -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필요한 보험계약은 전체 보험계약의 약 30% 수준

【개선방안】

- 상법 731조(타인의 생명 보험)상 전자문서를 포함

* 예를 들어 태블릿 PC 전자서명은 1,024단계의 필압을 인식하여 개인 고유의 필체가 저장, 또한 전자서명은 정교하게 암호화되어 복수의 서버에 저장되므로 보안/유실문제 최소화

현행	개정(안)
<p>*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p> <p>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p> <p>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좌 동)</p>

※ 해외사례

□ 미국·일본 등 선진국가도 사망담보 동의방식을 제한하지 않음

○ (美) 캘리포니아·뉴욕주 보험업법상 피보험자 동의는 요구하나 방식제한 없음

○ (日) 보험법上 타인 사망담보에 대한 요구를 하나 방식제한 없으며, 실제로 태블릿 PC를 활용한 계약 체결 中

8.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폐지·완화

【현 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을 목적으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를 카드사 6배, 여전사 10배로 제한

□ 레버리지 규제는 금융업권 중 여전업권만 적용되는 일률적 총량 규제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타 금융권역에 없는 과도한 규제

□ 현재 보험업법(法 §91조, 승 §40조)은 대부분의 금융업권주1)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 중이며, 백화점 등 타업권주2)에게는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 취급이 가능한 단종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고 있음

※ 주1)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 농협

※ 주2) 수의업,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신상품판매업, 정기항공운송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용품판매업, 백화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여객운송업, 여행사업, 부동산 지문 및 중개업,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이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기능과 고객의 편의 제공 등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 취급이 가능

【개선방안】

□ 일률적인 총량규제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1)레버리지 규제를 폐지하거나, 2)최소한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총자산에서 기업대출 자산을 제외할 필요

9.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허용

【현 황】

□ 현재 보험업법(法 § 91조, 승 § 40조)은 대부분의 금융업권^{주1)}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 중이며, 백화점 등 타업권주²⁾에게는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 취급이 가능한 단종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고 있음(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 주1)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 농협

※ 주2) 수익업,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신상품판매업, 정기항공운송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용품판매업, 백화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여객운송업, 여행사업, 부동산 지문 및 중개업,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이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기능과 고객의 편의 제공 등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 취급이 가능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대부분의 업권에서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에게만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업권간 업무 형평성 문제 초래

【개선방안】

□ 보험업법시행령(제40조제1항제3호)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지정

기대효과

- ① 산업·건설기계, 의료기기, 선박, 항공기 등 보험이 필요한 물건을 리스하는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 ② 리스·할부금융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특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및 상품 선택권 강화

VIII. 인력 · 노사

◀ 목 차 ▶

1. 고용형태 공시제도 공시항목의 개선	207
2. 직업훈련 인정요건 최소기준 통일	208
3. 직업훈련 지원금 차등적용 개선	209
4. 병역특례 대기업 T/O 배정	211
5.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제한 개선	212

1. 고용형태 공시제도 공시항목의 개선

【현 황】

- 2014년부터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나, 실제 내용에는 소속외 근로자(용역, 하도급, 파견 등)까지 공시대상의 범위에 포함(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산업별 특성과 개별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법안으로 판단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보다는 여론이나 국민정서를 이용하여 기업에 대한 직접고용의 강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개선방안】

- 기업의 고용구조는 기업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용역, 하도급, 파견 등의 소속외 근로자는 특정 업무 분야에서 제한된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영역은 사회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경비, 생산설비 관리, 보수 등)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형태 공시대상의 범위에서 소속 외 근로자(용역, 하도급, 파견 등)는 제외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될 것임

2. 직업훈련 인정요건 최소기준 통일

【현 황】

- 훈련과정 인정요건(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 최소 훈련기간 2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대상은 1일, 8시간 이상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달리 여타 중견기업, 대기업은 훈련과정 인정요건에서 차별을 받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1))
 -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개선방안】

- 직업훈련 인정요건 최소기준에 대한 기업규모별 차별 시정
 -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 일원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p> <p>① (생략)</p> <p>1. <u>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u></p>	<p>*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p> <p>① (좌동)</p> <p>1. <u>훈련기간이 1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u></p>

3. 직업훈련 지원금 차등적용 개선

【현 황】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자체훈련 등)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3의 조정계수,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자체훈련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120시간 이상인 훈련을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
 - 자체훈련 등: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 위탁훈련: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40
 -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 피보험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 100분의 50
 - 피보험자수가 1,000명 이하인 기업 : 100분의 80
 - 우선지원대상기업 : 100분의 120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훈련과정 인정요건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非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집체훈련 지원금에 대해서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차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름
(예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2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등으로 구분

【개선방안】

- 훈련과정 지원대상 인정요건과 부합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원금 차별 폐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20, 그 외 기업은 동률적용 (100분의 8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2조(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u>1,0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120시간 이상인 훈련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한다.</u></p> <p>1. 자체훈련 등: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p> <p>2. 위탁훈련: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40</p>	<p>*제9조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p> <p>① (좌 동)</p> <p>② (좌 동)</p> <p>③ (삭 제)</p>

4. 병역특례 대기업 T/O 배정

【현 황】

- 2013년부터 대기업에 병역특례 T/O 배정 중단(병역법 시행령 제77조)
 - 2011.4.29 대통령 주재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채택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병역특례 제공을 통해 국내/해외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영입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유인책이 사라진 상황에서 많은 인재가 유실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해외 석박사급 인재들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를 찾지 못해 현지의 업체로 입사하는 등 ‘두뇌유출’ 심각
- 대기업 T/O 배정 중단 이후 대·중견기업 부설 연구소 편입률(배정인원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중)이 감소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어긋남
 - 대·중견기업 편입률 : 2012년 93.2% → 2013년 77.8%
 - 중소기업 편입률 : 2012년 40.2% → 2013년 39.3%(* 출처: 병무청)

【개선방안】

- 대기업 병역특례 T/O 제한을 완화하여 국가차원의 기술인력 유출 방지 필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 ② (생략)	① ~ ② (좌동)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 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5.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제한 개선

【현 황】

- 2011년까지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를 만족하면 대기업도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에 의거하여 대기업은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083호)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고급 과학기술인력들을 중소기업에만 배치함으로서,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핵심 연구 분야임에도 대기업을 배제하여 우수 인력의 확보에 제한을 받음
- 대기업을 배제함으로서 우수 석/박사 인력들이 희망하는 연구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어 사실상 전문연구요원 기회를 포기하거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되었으나 경력과 관계없는 연구소에 선발돼 연구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점 초래
 - 병역의무 완료 후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고 이직할 확률이 높음

【개선방안】

-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제한 규정 삭제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083호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신청대상)</p> <p>-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p> <p><u>※ 대기업은 '13년 하반기에 병역지정업체 신규신청은 가능하나, 신규·기존 지정업체 모두 인원배정은 되지 않음</u></p>	<p>(신청대상)</p> <p>-(좌 등)</p> <p><u>※(삭 제)</u></p>

IX. 조세

◀ 목 차 ▶

1.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차등 완화	215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규모별 차별 해소	216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동일 적용	218
4.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혜택 부여 ..	220
5. 외국법인(소유주 한국 국적)의 국내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222
6.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	224
7.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한 연장	227
8.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229
9. 기업소득 환류세 적용시 배당제한 기업을 고려하는 장치 마련	231
10. '기업도시 토지에 대한 투자'를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한 투자로 인정	232
11. 중소기업 이외 법인의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허용	236
12. 법인 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237
1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238
14. 리튬폴리머 축전지 관세율표 개정	239
15. 백금족 귀금속 관세율 조정(철폐)	241

1.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차등 완화

【현 황】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세액공제 적용시,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율이 없거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비 공제율이 현격히 떨어짐
-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종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하던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동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
 - 하지만, 지방소득세은 법인에 대해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아울러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법규가 신설되고, 기존의 세액공제도 축소되고 있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투자유인을 위해 세법이 개정되고, 규제성격의 세법도 새로 생기는 상황에서 반대로 투자세액공제율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
- 종전 대비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증가하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
- 세수 확보와 규제 강화라는 명목아래 최근 몇 년간 종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각종 규제성격 세법이 생겨나고 있어 법인에서는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많음

【개선방안】

- 세액공제 관련 : 대기업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주의 세액공제 수준 유지
- 지방세법에서도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규정 마련
-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세법 보완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규모별 차별 해소

【현 황】

□ 2015年 세법 개정에 따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전기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은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중소기업 외(중견기업, 대기업)의 기업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 ‘기본공제’ 대상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기업은 배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추가공제금액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신규 설비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는 원가상승요인이 되어 제품경쟁력을 저하시킴

○ 원가상승에 의한 제품 경쟁력 저하를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상쇄해야 하는데, 전기 대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국내투자 관련 세제지원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업재편을 위한 대규모 신규투자가 지역적으로 제약되고, 세제지원마저 제한적일 경우 기업의 사업재편이 활성화가 곤란

【개선방안】

- 과세형평성 실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에 대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적용
 -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
 - 전기대비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확대 적용
(기존 : 중소기업 →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

-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지역(수도권),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허용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동일 적용

【현 황】

- 현행법 상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의제매입세액)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사업자의 업종(음식점업 또는 제조업)과 형태(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달리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84조)
- 동일 면세농산물에 동일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업종 등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공제 한도설정 도입배경(정부)
 - “음식점 사업자”, 매입액 과다신고 사례가 빈번
 - ☞ 음식점업(특히 개인)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액을 과다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
 - 즉,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업종으로 판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설정
 - “음식점 사업자”,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37% 정도로 파악. 이 중 농수산물 매입액비율을 약 30% 정도로 예상하여 이를 공제한도로 설정
 - ☞ 기재부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37% 정도로 파악되고, 음식점업의 매입액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 식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농수산물 매입액은 37%미만일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매출액 대비 30%로 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도설정 비율(2015년 현재) ; 개인 음식점업 경우, 공제한도 45%~60%로 시행 중
 - * 1억 원 이하 개인; 60%, 2억 원 이하 개인; 55%, 2억 원 초과 개인; 45%

□ 제조업(법인사업자) 경우

○ “식품제조업(법인)”, 매입액 과다신고 할 수 없는 투명한 구조

☞ 식품제조업 법인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의 매입량이 크며, 거래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매입액의 과다신고 염려가 없음

☞ 특히, 수입 농수산물의 매입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는 바, 매입액 과다 신고가 있을 수 없는 전적으로 투명한 구조

○ “식품제조업(법인)”,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약 70% 가량. 일례로, 대두가 공사업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입액이 무려 72% 정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도설정 비율(16년 현재); 제조업의 경우, 공제한도 35%기준(음식점업 사례를 토대로 도출한 기준이며, 2015년 12월경 5% 인상된 35%로 설정. 이마저도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적용)을 확일적 적용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도입된 제도로 동일한 면제농산물 등에는 동일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음식점은 8/108(공제율)을 공제하고, 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102만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남

【개선방안】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공제율 8/108를 적용해야 하며, 공제한도 범위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개정

□ 심각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매입세액공제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이라도 시급히 개선

○ 식품제조법인의 매입액신고 투명성 및 농수산물 매입비중을 감안한다면, 공제한도 폐지가 바람직

□ 일몰기한 연장 필요

4.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혜택 부여

【현 황】

□ 고도기술 수반사업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 제121조의 2에 의거하여 조세를 감면

<p>【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p>4) 3)의 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p> <p>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p> <p>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p>
<p>【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의 지방세를 초기 5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부여 받고 있음

- 본 법령의 제정 시 국내에 없었던 산업이었으나, 이후 H사의 탄소섬유사업과 같이 국내기업이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외투기업(예시: Toray)과의 차별이 발생

【개선방안】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제도는 유지하되, 국내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외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가 바람직

5. 외국법인(소유주 한국 국적)의 국내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현 황】

- 국내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조세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
- 조세감면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자격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외국인투자)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이고 對한국 투자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설립자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사유로 국내 경제특구에 투자 시 외국인투자 혜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 후 국내 경제특구에 확장 투자한 실제 사례
- 그러나, 동일한 한국계 외국기업이 유턴할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종 보조금 및 세제·금융 등이 지원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있음
- 해외에서 청산 및 사업축소 후 한국으로 유턴한 경우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인정 범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조건 중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국내 투자 주체인 외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이상 가질 경우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 삭제(한국국적 소유자에 의한 외국법인 설립 등)

현행	개정(안)
<p>*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p> <p>.....중략.....</p> <p>②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u>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 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u></p> <p>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p>	<p>○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 삭제</p>

6.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

【현 황】

- 한미FTA 타결과 함께 선진국 수준의 GMP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항을 신설, 세액공제를 허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14년부터 국세감면율이 기존 (2008~2010年) 일괄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2016年限 일몰)
- 최근, 同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최근 산업계에서는 對정부 간담회 자리에서 제약/바이오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감면세율 확대를 건의(한미약품 (2016.1月), 삼성바이오로직스 (2016.3月) 等)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바이오제약 육성의 필요성>

-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산업
 - 세계적 고령화, 선진국형 질병 확대로 7.8% 이상 고성장 : 2014년 1,790억불 → 2020년 2,780억불 (CAGR: 7.6%)
- 아직, 산업형성 초기 단계여서 조기육성 時 시장 선점 가능
 - 산업역사 40년에 불과, 미개척 분야가 많아 기술선점 중요 : 최초의 바이오제약 기업인 Genentech社는 1976년 설립
- 최근의 성공사례는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로슈·BMS 위탁생산 수주, 한미약품의 8조원 규모 바이오 제약 기술 수출 等

- 향후 정부의 정책적 육성과 기업의 혁신의지가 결합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바이오제약 강국으로 도약 가능

<시설투자 세액감면 확대의 건의배경>

□ 신규 바이오제약 공장은 他 산업과 달리 수 천억원의 설비투자 외에도 공장건설 및 상업가동을 위한 밸리데이션 등 가동 및 매출실현까지 최소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 되는 특성이 있어 신규설비 투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

- 반도체 공장의 경우,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14개월이 소요, 공장준공 後 즉시 상업생산이 가능

- S社 이천공장 : 2014.7月 착공 → 2015.8月 준공(14개월)

- 반면, 바이오제약 공장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24개월이 소요되며, 공장준공 後에도 밸리데이션 및 시생산까지 마치는데 36개월이 추가로 소요

- B사 송도 3공장 : 2015.11月 착공 → 2017.10月 준공 (24個月) → 2018.9月 GMP 밸리데이션 완료(12個月) → 2020.8月 시생산, FDA 생산인증(24個月)

- * 상업용 의약품의 경우, 기술이전부터 FDA 제조허가 승인까지 6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약 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총 24개월 기간이 소요

- 이와 같이, 新規 바이오 공장에서 본격적 상업가동 및 매출을 실현하기까지 최소 5년이 준비기간이 소요

- ※ 三星은 바이오사업 진출 時, 회임기간이 장기인 「業의 특성」을 고려하여 1공장 투자비 90% 이상을 自己資本으로 조달했음

□ 바이오제약은 첨단산업으로 고용의 질(質) 매우 우수

- 바이오제약 공장 신규투자 時 400~500명의 직접 고용이 생기며, 이 중 대부분이 신규채용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인력 고용 증가에 크게 이바지

- 현재 고용현황 : 1,300명(신규고용 70%, 여성인력 40%) ⇒ 3년(2013~2015) 연속, 고용창출 우수기업賞 수상

□ 三星이 營爲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은 高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의 2015年 제조업 평균영업이익률은 약 5%인데 반해, 바이오제약은 최대 50%까지 이익률이 예상되고 있어 통상의 시설투자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월등
 - 또한, 바이오 CMO 사업은 제조 서비스業의 일종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他제조업 평균치(5%)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높음
 - 바이오와 他제조업과의 부가가치 비교
 - 바이오제약 부가가치를 = 40~70% (영업이익 30~50% + 인건비 10%)
 - 他 제조업 부가가치를 = 10% (영업이익 5% + 인건비 5%)
- ※ 정부의 세수의 기초가 되는 부가가치액의 관점에서 볼 때, 바이오제약 시설투자는 R&D 투자와 충분히 견줄 수 있음

【개선방안】

- 현행 의약품 시설투자 감면제도의 경우, 대규모·장기투자 등 바이오제약 플랜트 사업여건을 감안할 때, 바이오제약 분야 신규 시설투자에 대한 현행 3%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바이오제약 기업의 신규공장 투자유인 필요
- 기 준 : 현행 R&D 투자의 세액공제율(20%)의 연장선에서 시설투자도 적정수준으로 세액 공제율 확대
- 감면율 : 현행 3%(대기업) → 개선(案) 10%(대기업)

기대효과

- 바이오제약의 높은 성장성을 볼 때, 시설투자向 지원확대로 확보된 財源은 R&D 및 생산설비 확대에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
- 바이오제약은 수출형 산업으로 관련분야의 인센티브 확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상 미미

7.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한 연장

【현 황】

대기업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 폐지(중소기업 감면 유지)

○ 주요 외국 국적항공사는 WTO Annex 4(a) 민간 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으로 상호간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가 없음

－ 감면 : 관세법 제89조 제1항(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 폐지 : 관세법 제89조/부칙 제14조(법률 제11602호) 개정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2014.12.23.부)

<항공기 부분품 관세율 추이>

연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감면율	100%	80%	60%	40%	20%	폐지

감면 축소 및 폐지 사유

○ FTA 협정(한-미, 한-싱가포르 및 한-EU) 체결로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도 FTA를 활용하면 관세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정부입장)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주요국가의 WTO Annex 4(a) 협정 가입 관련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만, 마카오, 이집트 등 대부분의 항공강국이 WTO Annex 4(a) 협정에 가입되어있어, 민간항공기, simulator, 장비공구, 부분품 및 수리에 부과되는 관세, 과징금 등 부과금이 가입국간 상호 철폐됨

○ 단 정부 지원 및 보조금 금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항공기제작업체에서 WTO Annex 4(a) 협정가입에 반대, 국토부는 WTO Annex 4(a) 가입 반대 입장)

□ FTA 활용 관련

- 항공기 부분품 제작업체들의 원산지증명 발급 내부시스템 부재 및 가공수리분에 대한 FTA 협정문 내용 불충분으로 국내업체의 FTA 활용률은 매우 미미함
- 항공업계의 경우, 주요 거래국인 미국-EU-싱가폴로부터 수입 시 FTA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는 18.9% 수준(가공수리분 포함)
- 특히, 해외 임가공수리의 주요 거래국인 싱가포르, EU 의 경우 FTA 협정조항 미비로 관세면세 혜택 불가

□ 공정한 시장경쟁환경 조성

- 중국, 동남아, 유럽 등 항공사 주요 수익노선의 경우 외국항공사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외국 항공사가 납부하지 않는 세금의 부과는 국적항공사에 대한 역차별
-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 세제 지원 정책 필요

【개선방안】

- FTA 활용, WTO Annex 4(a) 가입 등, 대안이 생길 때까지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 연장

8.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현 황】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경쟁국가는 항공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부과 :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 *세율 : 2~2.02%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개요

- 목 적 :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 감면내용 : 취득세 100% 감면 (2015~2016) / 60% 감면 (2017~2018)
- 감면실적 : 최근 3년간 1,504억 원(8개 항공사 취합)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세계 10대 항공운송강국 중 항공기 취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
- 해외주요 경쟁국과의 형평성 문제 및 경쟁력 약화 유발

<세계 10대 항공운송강국>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미국	중국	UAE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싱가포르

* 출처 : ICAO Annual Report(2015)

지방공항 운항동력 확보

- 지방 내륙노선의 만성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선 유지
- 일부 국내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 내륙노선이 적자인 상황에서 취득세 부담 증가 시 대폭적인 운항횟수 감축 또는 폐지가 불가피

* 적자현황 : -242억 원(2013년), -243억 원(2014년), -339억 원(2015년)/(7개 내륙노선)

청년층 일자리 확대 저해

- 대내외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항공기 투자로 연간 8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선도하였으나 취득세 부담으로 신규고용 확대 저해

국가 외환보유 증대 기여

- 항공운송산업은 연간 82억불의 운송수입을 거둬들이는 대표적인 외화획득 산업 (한국은행)
- 주요 외화획득 산업인 관광산업과 직접 연계산업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측면에서 전폭적 지원 필요

【개선방안】

- 취득세 100% 감면기한 추가 연장(현행유지)

9. 기업소득 환류세 적용시 배당제한 기업을 고려하는 장치 마련

【현 황】

- 기업소득 환류세 적용대상기업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중소기업 제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법인세법 제56조, 동 시행령 제93조 제4항)
- 기업의 미환류소득금액 산정시 과세대상 당기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일정 항목을 가감 조정
- 과세대상 당기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투자*·임금증가·배당액(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 기업이 미환류소득 산정방식에 투자포함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차감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에 기반하여 산정
 - 기업회계상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무조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기업소득 환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채권은행의 관리를 받을 경우 배당의 제한이 존재
- 상장법인은 배당이사결정시 기업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이 가장 중요 판단요소
- 기업의 배당이사결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소득 환류세 적용대상기업에 배당여력이 없는 기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개선방안】

- 기업소득 환류세 적용대상기업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음수인 기업, 금융회사 등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중인 기업을 제외

10. ‘기업도시 토지에 대한 투자’를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한 투자로 인정

【현 황】

□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순환을 유도 한다는 취지로 2014년 12월 기업소득 환류세제 관련조항 신설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⑤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p>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p> <p>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p> <p>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p> <p>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p> <p>⑫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p>

※ 투자로 인정되는 부동산의 정의 (기획재정부령 :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건축물	○ 해당 사업연도에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 임대/위탁 등으로 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투자에서 제외하나 부동산업 등이 주업종 인 경우 임대건축물 포함
토 지	○ 업무용 신/증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해당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만 인정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기업도시사업은 대규모 부지조성공사를 통하여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투자금이 토지에 투입되나 기업소득 환류세제 관련,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과도한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
 - 1) 투자포함 산출방식 : (기업소득 x 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 = 미 환류소득
→ 미 환류소득 x 10% = 미 환류 관련 추가 법인세
 - 2) 금번 제정된 기업소득환류세제 조항에 있어 투자인정 항목에 토지부분이 협소한 범위로 규정된 사유는 기업도시사업과 같이 민간이 대규모 부지조성공사는 수행하는 사업이 극히 드문 관계로 관련 조항 제정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취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목적으로 기업도시사업은 대부분의 투자가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관련 법령 제정 취지에 부합됨에도 토지에 대한 투자가 투자인정항목으로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

- 또한, 미 환류소득 산출시 두가지 방식(‘투자포함’ 또는 ‘투자제외’) 중 하나의 방식을 적용하고 한번 적용한 방식은 2017년까지 변경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자를 인정받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예상하였을 때에는 ‘투자포함방식’ 이 유리하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에는 ‘투자제외방식’ 이 유리한 상황으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는 리스크를 감안한 채

미환류 소득산출방식을 정하여야 하는 애로점이 있음

※ 투자제외 산출방식 : (기업소득 x 30%) - (임금증가 + 배당) = 미 환류소득
(투자가 적은 기업의 경우 투자제외 산출방식 유리)

【개선방안】

□ 법령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기업도시사업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를 기업소득 환류세제 산정시 투자로 인정하여 투자 촉진 및 기업도시 활성화 도모

□ 더불어 미 환류소득 산출 방식을 해당연도의 기업도시 법인상황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도시 조성에 매진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필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p>	<p>*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p> <p>③</p> <p>.....</p> <p>.....</p> <p>.....</p> <p>.....</p>
<p>*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p> <p>①~⑤ <생략></p> <p>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 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p>	<p>*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p> <p>①~⑤ : <좌동></p> <p>⑥</p> <p>.....</p> <p>.....</p> <p>.....</p> <p>.....</p> <p>.....</p> <p>.....</p>
<p>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p>	<p>1.</p>

<p>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p> <p>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p> <p>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p> <p><신설></p> <p>⑫ <u>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u></p>	<p>가.</p> <p>나.....</p> <p>다.....</p> <p>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p> <p>⑫ <u>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다만,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경우는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방식은 해당 사업연도에만 적용할 수 있다.</u></p>
--	---

11. 중소기업 이외 법인의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허용

【현 황】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함(법인세법 제13조)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 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해당내용으로 인해 누적결손으로 재무부담이 있는 법인임에도 중소기업 등이 아닌 경우 차기년도에 수익 발생 시 이월결손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현금 유출 초래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공제한도를 신설한다하나 그 목적이 사실상 단순 근시안적 세수 증가에 있음
- 누적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에게 결손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면 재무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결손금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
- 더욱이 이미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에서 결손금에 대한 소급을 중소기업으로 한정시켰기에 이런 추가적인 조치는 과다

【개선방안】

- 이월결손금 공제의 경우, 개정 것처럼 전액 공제 가능하도록 허용

12. 법인 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현 황】

- 2014년 1월 1일,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법인세법·조특법 상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배제(지방세법 제103조의22).(지방세법 제103조의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신설)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이 내국법인인지 해외자회사인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달라짐
 -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
 - 반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
 - 즉,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배제로 인해 해외진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고 국제적 이중과세문제가 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
- 내국법인이 해외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하 ‘간주외국납부세액’)은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 중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조문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언급되어 있으면,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조약 상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있음

【개선방안】

- 국제적 이중과세문제 및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

1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현 황】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이 다음과 같이 강화(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구 분	종 전	개 정
외국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 :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 5%) - 보유기간 :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 : 25%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 5%) - 보유기간 :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외국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자회사의 직접 보유 지분율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 5%) · 내국법인이 10% 이상 간접 주식 보유 - 보유기간 :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적용 제외</u>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감면혜택제도가 아니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도 제외.
 - 국내·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축소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 강화는,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불완전조정으로 인해 외국자회사소득에 대해 국내모기업으로의 배당을 축소하고 현지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
 - 이는 국내모기업의 자금축소를 가져와 국내투자 및 고용 저하를 초래 가능. 즉,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 강화는 오히려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

【개선방안】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대상의 확대
 - 외국손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 적용대상에 외국손회사 포함

14. 리튬폴리머 축전지 관세율표 개정

【현 황】

- 리튬이차전지 주요 생산국(한국, 중국, 일본 등) 및 수입국(EU, 북미 등)에서는 세계 관세기구(WCO)의 6단위 HS Code 개정권고에 따라 2012년부터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기존 8507.80 에서 8507.60으로 개정 적용 중(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주요 국가의 리튬이차전지 HS Code 개정 비교>

국가	기존 HS Code	2012년 HS Code	구 분
한국	8507.80-2000	8507.60-0000	Lithium Ion
	8507.80-3000	8507.80-3000	Lithium polymer
중국	8507.80.2000	8507.60-0000	Lithium ion
미국	8507.80.8510	8507.60	Lithium-ion batteries
EU	8507.80.30	8507.60	Lithium-ion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리튬폴리머 전지를 리튬이온 전지에 포함하는 주요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리튬폴리머 축전지를 별도의 HS Code로 분류하여 FTA 및 ITA*(무세화품목확대) 협정 등에서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음(논의 안건 제외로 인한 양허 세율 미적용 및 상대국의 관세장벽 지적 등)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정보기술협정) :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 무역기구(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정보 기술(IT) 제품에 관한 국제 협정. WTO 회원국 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전기 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리튬이온전지는 전지의 형태에 따라 원통형, 각형, 폴리머(중합체: 반복 결합형태) 등으로 명칭 되며 HS Code 세분류에 따른 실익이 없음

【개선방안】

- 관련법령에 의거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개정(안)>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방안1)** 리튬폴리머 축전지(8507.80-3000)를 리튬이온 축전지(8507.60-0000)로 **통합**

○ **(방안2)** 리튬폴리머 축전지와 리튬이온 축전지의 HS Code 6자리를 **통합**

*리튬이온 축전지를(8507.60-1000)으로 변경하고 리튬폴리머 축전지를(8507.60-2000)으로 변경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HS Code 개선방안>

현 행	개정(안)	비고
리튬이온 축전지(8507.60-0000) 리튬폴리머 축전지(8507.80-3000)	8507.60-0000로 통합	HS Code 통합 을 통한 양허세율 적용
리튬이온 축전지(8507.60-0000) 리튬폴리머 축전지(8507.80-3000)	리튬이온 축전지(8507.60-1000) 리튬폴리머 축전지(8507.60-2000)	HS Code 조정 을 통한 양허세율 적용

기대효과

- 리튬이온전지가 양허품목으로 지정된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 시 **양허관세적용**으로 국내 수입 가격 안정화 및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국내에서 전지 Cell을 제조,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서 Pack 조립 등을 진행, 주요국에 판매되거나 국내 수요량은 수입되는 구조임

15. 백금족 귀금속 관세율 조정(철폐)

【현 황】

- 전 세계적으로 백금족 귀금속에 대해서는 무관세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만 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귀금속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관세법)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환경촉매를 국내에서 생산 시 사용되는 귀금속을 전량 수입해야하며 이에 대해서는 3%의 관세를 지불해야 함
- 환경촉매의 주요 경쟁업체는 유럽에 소재하고 있어서 촉매를 FTA 협정 국가로부터 수입 시 무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생산 촉매가 관세로 인해 역차별 발생

【개선방안】

- 백금족 귀금속을 환경촉매에 원재료로 사용하는 물량에 대해서 무관세 적용 또는 환경오염감면 대상품목(중견기업 포함)으로 적용(년간 90억 원 관세 납부액)